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기초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기초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때: 2012년 1월 25일 (수) 오후 2시~5시
- 곳: 흥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문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제1담회

- 때: 2012년 1월 25일 (수) 오후 2시~5시
- 곳: 흥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 ■ 집담회 순서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이희진(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싼 사람들
  - 문한뫼(학교폭력 피해 학생)
-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위원회)

###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각 쟁점별 토론을 열어주실 분들
- 인권 감수성과 긍정의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참교육 학교 만들기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 처벌과 보살핌 사이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학교폭력과 학생의 권한
  - 둠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넘쳐나는 학교폭력,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학생주도 갈등해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모색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
- 인권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학교폭력사건 해결과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지원망 확충의 중요성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 ■ 자료집 순서

###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8
-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싣 사람들 13
-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15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18
-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20
-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 36

###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인권 감수성과 긍정의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참교육 학교 만들기 54
- 처벌과 보살핌 사이 72
- 학교폭력과 학생의 권한 74
- 넘쳐나는 학교폭력,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77
- 학생주도 갈등해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모색 80
- 인권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83
- 학교폭력사건 해결과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지원망 확충의 중요성 86
- [참고자료]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의 글 89

1부. 진단.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학교 그리고 폭력의 재생산

- 이희진(대구 칠성초 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말 그대로 학교폭력 정국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폭력 사건들이 보도된다.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 직후에는 학생간 폭력 특히 소수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내 폭력사건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보도되다가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이 이슈화되고 있다.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들의 경향은 변화하고 있다.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 당시에만 해도 교육청과 학교, 교과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그래서 언론에는 가해자가 구속된 후 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보도되었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건 발생 후 교육청과 학교, 교과부가 아예 개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별' 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졌다. 소위 학교 폭력 예방(혹은 근절) 대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사회복지사나 스쿨폴리스 등 학생들의 폭력을 담당하기 위한 제도들을 확대하는 것과 학교 내 CCTV 망 구축이나 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감시체계 구축이 수립되고 있는 대책의 대표적인 예인데, 모두 문제학생(가해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어 사건 발생을 막아보고자 하는 방안들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경향에서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아 혹은 적, 혹은 심지어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sup>1)</sup>. 특히 오랜 가정폭력 등에 시달려 참다못한 정당방위로 저지른 폭력의 가해자<sup>2)</sup>와는 달리 최근의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또는 '그 나이에 절대 가질 수 없는 잔혹함을 가진', '구제할 수 없는' 괴물처럼 이야기되어 진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 1. 가해자의 생산

"저도 잘못된 거라는 거 아는데요, ○○이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구요."

1) 대전의 학생 자살 사건은 실제로 자살증후군(베르테르효과)의 예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희생자들에게 추모를 표하거나 그들을 기리는 행위가 학교 내에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자살이 전염되듯 퍼져나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2) 어머니를 살해하고 몇 개월동안 집에서 시체를 숨겨두었던 청소년의 예

학급 내 따돌림으로 나와 상담한 학생이 했던 말이다. 따돌림에 동참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동기는 그 따돌림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보다는 내가 '따돌림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나도 그 권력의 정점에 서보고 싶은 것이다. 화려하고 거침없는 존재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모욕하거나 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그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를 뒤집어 보면 가해자가 아닌 '보통의' 학생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해할 수 있다는 일상적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학생들은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열당하고 규제당하고 단속당하고 박탈당한다. 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탈-권력, 무시, 소외. 그 속에서 학생들은 그 누구도 '까지못할' 강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편, 예전의 엄석대가 누렸던 1인치하와는 달리 요즘의 일진은 다양한 계열의 권리자들이 연대하여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형태를 가진다(그래서 일'진'이지 않은가). 얼굴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말빨이 좋아서, 인맥이 넓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의 권리자들이 학생사회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 각각의 맡은 역할도 존재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는 공고해지고 맡은 역할에 따른 위계질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지는 위계질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학생들이 선망하는 무언가를 가진 이들이 일진이라는 점이다. 일진은 말 그대로 학생사회 속에서 권력관계의 일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놀랍게도 학생사회 속 권력관계의 일등급은 수능 일등급 혹은 내신 일등급보다 훨씬 다양성이 보장된다. 노래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학교 축제에서 멋들어진 보컬로 무대를 장식하고 난 후 일진에서 가입 제안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즉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따위는 모조리 묵살된채 입시 준비만 해야하는 지금의 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종류의 일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reset되는 경우도 있어 수능 한번 망치면 인생이 끝장날 것만 같은 입시에 비해 훨씬 관대하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사회가 그렇게 끔찍해하는 학생간 폭력은 어쩌면 입시경쟁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이 있다.

학생들로 인해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그 가해/피해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폭력들과 달리 학생 가해자는 처음부터 뚜렷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학교'라는 환경속에서 관계 속에서 권력이 생산되고 공고해진다. 이 점을 생각해본다면 학교에서 가해자(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는) 학생을 감시체계를 동원하여 찾아내고 격리해내는 방법이 얼마나 실효가 없을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다.

## 2. 학교와 폭력의 재생산

앞서 말한 대로라면 학교는 오히려 학생간 위계질서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은가?

### - 위계화된 지식과 만인과의 경쟁

'지식의 구조'라는 교육학 용어가 있다. 지식의 구조란 기본 원리 혹은 일반적 아이디어를 뜻하기도 하고 어떠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루너(Bruner)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대상에게 맞는 언어로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초등학생이 미적분학을 이해할 수도 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학을 익히게 할 의도는 없지만 지식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를 새겨본다면 그것은 어떤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통섭해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학습지 광고에서 유행했던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자'라는 카피는 지식의 원래 의미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에서 지식의 의미는 어떠한가?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식은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원리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수열 점화식보다 더 쉽고 단순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육에서는 그 위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이는 고등학교 수학을 익히고 있는 이보다 열등하다. 지금의 입시경쟁은 고3들만의 경쟁이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고등학생과 경쟁을 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는 좀더 남은 시간이 많고 고3학생에게는 남은 시간이 적어 더 절박하다는 차이 일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선수학습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연상케할 정도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한꺼번에 같은 링 위에 올려놓는다. 심지어 시교육청에서 조차 교육 예산으로 선행학습반을 운영한다. '스스로와의 경쟁'이라는 말은 이미 공교육 체제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가치도 입증할 수 없게된 학생들은 상대우위에 집착하게 된다. 만인과의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잊게 된다. 하나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감이다. 12월 이후 줄이은 대구시내 자살사건들은 모두 대구의 대차동으로 불리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학교들은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하여 학생들에게 죽은 학생들에게 국화꽃을 전달하는 것조차 막았다. 이는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쉽게 동조할만큼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미 학교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진이든 왕따든 자존감과 자기애를 지닌 학생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를 피폐하게 만든다.

### - 병영화된 학교에서 재생산되는 폭력

대구시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학교폭력 매뉴얼에서 말하는 학생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 흥기 소자를 제외하면 굉장히 애매하고 응색한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주된 내용은 학생-교사간의 관계로 학교 폭력이 학생 간 폭력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함
- 교사가 불러도 못들은 척 피하거나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함
- 교사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교사 없을 때는 거칠게 행동함
- 교사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함
- 불평불만이 많고 거친 행동과 화를 잘 냉
- 남에게 위협을 줄 만한 흥기를 소지함
- 친구에게 물건이나 돈을 자주 빌림
-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음
- 가정 형편에 비해 고급 의상을 착용하거나 돈의 씀씀이가 헤诸侯
- 학교 후 귀가하지 않고 학교주변에서 친구들과 자주 서성임

### 가해 학생

<학교폭력 매뉴얼에서 말하는 학생 가해자의 특징>

생각해보면 의아하다. 학생 간 폭력이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학생 간 폭력이 문제라면 당연히 학생 가해자의 특징 역시 학생 간 관계에 기반하여 서술되어야 할 것인데 매뉴얼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지금의 학교에서 올바른 학생/문제 학생을 나누는 기준이 상명하복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많은 수의 교사들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학생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기대 한다. 아니, 강요한다. 애플(M. Apple)의 <교육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실린 채육 수업을 관찰한 보고서에는 교사는 구기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구기능력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칭찬과 경고를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교사는 '시작'이라는 구호와 동시에 연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칭찬하고 '끝, 집합'이라는 구호에도 연습을 계속하는 학생을 가장 호되고 아단쳤다. 명령에 따른 즉각적 복종. 명령없이 시작되는 행동은 모두 비정상 혹은 범죄로 취급되는 사회. '합의'의 결여. 그것이 병영화된 우리의 학교이다.

"병영은 군율로 다스려진다. 단 한명의 흐트러짐이 전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정보는 독점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옳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 합의 자체가 동기를 부여하지만 합의없는 권력은 '지키지 않으면 응징'을 당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유지된다. 또한 권력의 안전성은 복종하지 않는 이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엄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두발규제가 어떠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이라는 두 글자를 길게 늘어쓴 것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학생의 몸 구석구석과 매분 매초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관여하는 상황에서 눈빛이 이상하다거나 발걸음 소리가 크거나 하는 좀스럽고 치사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행해진다. 이러한 폭력은 개인에게 철저한 무력감과 자기비하를 가지게 한다.

이는 앞서 말한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구’에 다시 이어진다. 병영화된 학교에서 무한 루프로 돌고 도는 폭력의 재생산은 간혹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 두발단속을 하는 교사 대신 돈을 뺏는 일진이 자리하기도 하고, 복도에 매일 엎드려 뻗쳐를 하는 학생 대신에 나이 어린 기간제 여교사가 자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폭력이 재생산되고 있는 순환 구조이다. 구조가 폭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리 저리 옮기고 바꾼다한들 피해자/가해자의 위치만 바뀔 뿐 누군가는 피해자가, 누군가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리를 끊기 전까지는.

##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쌓 사람들

- 문한뫼(학교폭력 피해 학생)

요즘 한 친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썼던 일기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아이의 일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 내 경험이 떠오르며 오버랩 됐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됐다.

*학교가기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광활한 정글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다. 무섭다.*

나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 처음에는 내가 여자애들과 놀았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괴롭힘과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선생님은 그 모습만 보고 나를 혼냈다. 그 때 나는 아무리 괴롭힘을 받고 혼나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속으로만 분노를 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다.

수업시간에 나를 왕따 시키는 애들이 뒤에서 나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던졌다. 처음에는 조용히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세게 던지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 크게 하지마라고 외쳤는데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계시던 선생님이 뒤돌아서 나에게 고함을 치고 막대기로 내 발바닥을 때렸다. 너무 억울했던 나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과 상의해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후로 집에서 5년간 홈스쿨링을 하다가 중학생이 됐을 때,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기숙형 대안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대안학교에도 존재했다. 이미 초등학교 때 폭력에 익숙해져 들어오니까 대안학교에 들어와서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형들은 항상 ‘씨발’, ‘개새끼’, ‘병신’ 등 욕을 달고 살았고 후배들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그걸 빌미로 방에 가두고 협박했다.

특히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찍혀서 형들의 욕설과 협박, 폭력 속에서 집중적으로 몇 달을 시달렸다. 그러다보니 친한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어느새 나는 왕따가 되어있었다. 아마 그 친구들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나를 왕따 시켰을 것이다.

그 때 나는 항상 우울해서 틈하면 눈물을 흘렸고 욕을 하고 다녔다.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

아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롭힘을 당한 후부터 누군가에게 목이 졸라는 꿈을 꾸기도 했고 날카로운 칼에 몸이 토막 나는 꿈을 꿀 때도 있었다.

그 이후부터는 꿈꾸기도 두렵고 무엇보다 형들이 밤에 방으로 찾아올까봐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고 방에 형들이 있을까봐 여기저기 방황했다. 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를 흥보는 것 같아 불안했고 나를 과롭히는 형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화들짝 놀라서 울 때도 많았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께 괜히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다. 평소에 나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 아버지는 내 변화를 눈치 채시고 나에게 계속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처음 한 달간은 아버지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못했다.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설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찌나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가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약몽에 시달려서 이야기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부모님에게 말씀 드렸다.

부모님은 차분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다.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진짜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함께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네 감정상태가 너무 불안하니까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리고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진짜 흥분한 상태여서 뭘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내 감정 상태를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심리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자 부모님은 나에게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을 가르쳐 주셨다. 4대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다른 친구가 과롭힘을 당할 때 도울 것이다.
3. 나는 혼자 있는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4. 나는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어른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 4대 규칙을 바탕으로 애들과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년 규칙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내 경험을 글로 쓰라고 하셨다. 글을 쓰고 정리하면서 전에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기억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아래 학년에게 학년 규칙을 만들게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중등부에서 폭력의 대물림이 끊긴 상태이다.

##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학교 안 폭력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여전히 뒷북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학교 안 구성원 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해 보자. 학교 안 폭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세 번째는 학생과 학생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장애라는 것을 보는 관점을 짚어보자면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과롭힘과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는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 학생이 많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당장의 폭력 피해자이고 예비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통합교육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으며 부모들로부터 통합교육이 외면당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은 우려의 주순을 넘어 생존의 수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수학교, 통합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각종 폭력현상은 호기심이나 재미가 아닌 놀이감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인간성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 장애라는 것을 전제로 특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최소한의 대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1. 지적장애 3급의 남학생을 성추행함.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공개된 장소(복도)에서 성기를 만지고 놀리는 상황이 만들어짐.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로 인해 공포유발.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중. 가해학생들의 경우 일반적 놀이 정도로 여김. 학교에서는 부모의 강한 반발로 운영 위를 개최. 피해자나 피해부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결국 학교 입장은 중시하고 피해학생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경리함.

2. 지적장애 학생(초등)을 특수교사가 한 학년 동안 과롭히고 체벌(폭행)을 가함. 정신과 치료 병행. 주로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가족들의 접근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함. 장애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학교와 교사와 아이들이 장

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가진 특수교사에 의해 생긴 사안. 학교에서 는 가급적 학교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며, 정당히 합의하고 종용하며 해당교사를 타 학 교로 전근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하려 함.

## 3.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수련회와 현장학습에서 가급적이면 빠지면 좋겠다는 강압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보호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감. 6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야외학습에 참여 하지 않았다고 함. '\*\*이는 데려갈 수 없다.', '가고 싶으면 보호자가 따라가라.'함. 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노모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4.

교사가 주차장에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때리는 행위나, 수련회에서 변기에 과자를 담 가놓고 건져 먹게 하는 행위나, 화장실에서 성적행위를 강요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교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면서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 행위, 머리에 불을 붙이는 행위, 교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은 행위 등.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은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정도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장애학생이 입학을 하는 것부터 거부하는 것이 일반화 된 현상이고, 담임이라도 말계 되면 장애학생을 교실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시켜가는 현상은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한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그런 속에서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경우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수립, 공동체의식 부족 등 일반적인 관계를 만들 어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런 특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평등함'을 강조하며 동일하게 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또한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교사에게서 보이지 않는 경우 가 너무 많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들이 대부분 '문제행동'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렇게 행동특성이 나타나게 되면 내려지는 조치들은 억압적 방법으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교사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판단과 인지가 부족하다보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의 목소리 톤이나 억양, 인상 등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것을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는데 그럴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불안함을 드러내면서 왔다, 갔다하는 식의 행동

이 나오는데 그런 행동들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재미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크고 작 은 위협들이 늘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려 할 경우 강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들이 되풀이되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사에 의해 벌 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겠다. 언어폭력은 일상다반사로 보고, '문제행동'이라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원되는 '행동수정'이라는 것은 늘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다 른'것과 '틀린'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학급운영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평등함'을 내세운 '체벌'위주의 운영을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 학생의 인권은 학교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장애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은 장애가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들은 결국 장애학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 도가니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 한 수준이었지만 법의 관대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중하는 결과가 나왔던 일이다.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결국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대전의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16명의 학생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이 건 역시 피해자나 부모들의 요구대로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세간의 관심도 집중되지 못했다.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정리한 학생들의 경우 죽음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항변한 것이기에 폭력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경우 과롭힘을 당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매를 맞아 시퍼렇 게 맹이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판별하지 못하다보니 부모들의 속만 태우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장애가 가지는 또 다른 피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감시자의 기능과 협력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 내 장애학생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 이 과제를 안고 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 고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감 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인격권의 문제다. 그 안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 ：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 1. 들어가며 - 우리는 왜 차별사례모음집을 내게 되었을까

성소수자 차별의 특징은 도처에서 끊임없이 차별이 일어나지만, 차별했노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낯선 이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교리를 따른 개인의 신념으로, 혹은 차별대상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조언(?)으로 정당화되거나 감추어진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올바른 교육"이라는 또 다른 외피를 입고, 명분과 권위를 획득한다. 이들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흔히 겪을 수 있는 혼란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교육과 계도, 심지어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 치의 의심 없이 규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사와 학교의 방관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따돌림, 과롭힘, 폭언 등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절망하고 학교를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통 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성소수자 자체가 여전히 이 사회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2011년 9월 8일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과 성소수자 학생 보호조항이 삭제된 것에 분노한 이들이 모여 조직되었다. 이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차별사례집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차별사례팀이 꾸려졌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각 단체의 상담 및 대응 사례, 메일로 받은 개인의 경험, 차별사례팀의 인터뷰 등을 통해 2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46개의 사례가 모였다.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이하 "차별사례모음집")』은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차별사례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란 있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 한다'는 비상식적인 공격 속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기 위해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후 차별사례모음집은 서울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교사, 상담가 등 책을 읽고자하는 개인들에게도 배포되었다.

이 글에서 소개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의 사례는 모두 이 차별사례모음집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서 모든 사례를 소개할 수 없었기에 사례의 선정에 자의가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성소수자는 들어내지 않으면 차별받지 않는 데 왜 엄살이냐'는 공격,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것보다 더 센 사례가 없느냐'는 물음들을 겪어내야 했기에,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차별사례모음집에서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는 심각한 차별 사례들이다. 가장 심각하고 아픈 것들을 드러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생각에 글을 쓰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크다.

본론에서는 먼저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한 기존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실태에 대해 두 개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은 어떤 것들인지 유형화 하여 정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 2. 통계로 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서두에 덧붙여야 하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장재홍 등이 2003년에 실시한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분석"이라는 연구에서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은 12.7%로 나타났고, 김경준 등이 실시한 "청소년 유형별 복지요구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이는 성소수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해외 연구의 일관된 결과와도 일치하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 중 3-4명은 이성애자가 아닌 정체성을 지닌 이들인 것이다.

청소년기의 동성애에 대해 흔히 '한 때 그러다 말 것' 혹은 '청소년기의 혼란'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2차 성장을 겪으며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2006)<sup>3)</sup>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78%(105명)가 15세 이전에 자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1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소수자 37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2007)<sup>4)</sup>에서도 동성애자의 66.8%가 10대 혹은 10대 이전에, 트랜스젠더의 89.2%가 10대 혹은 10

3)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4)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 기획단, 2007.

대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통념과 달리 청소년기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는 시기로 일방적인 ‘계도’나 ‘교화’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2006)에서 성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7.4%(104명), “자살을 시도해 봤다”는 응답자 비율은 47.4%(64명)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전국 중고교생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 자해 및 자살시도 경험이 10%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불과 17.4%(23명)뿐이라는 점은 이들의 답답하고 외로운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전국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sup>5)</sup>에서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해 듣거나 보고도 묵인한 적 있다”는 대답이 30.4%(153명), “파돌림을 당하는 것을 묵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4%(12명), “훈계 및 교정 지도한 적 있다”는 비율이 5.2%(2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교사 개개인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는 43.6%(219명)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개인은 이들의 존재를 단순 묵인하거나, 훈계, 교정하려 하고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알아도 방관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교사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과 학교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한국 사회, 그 자체의 본질적 문제이다. 결국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견된 상황인 것이다.

### 3.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실태

#### <사례2>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엔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그 학교는 남녀공학이 있었거든요 평택 근처에 뉴스에도 한 번 났었는데요 교내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어쩌다 아웃팅을 당하고 나서 둘이, 막 급식실에 있는데 막 바나나를 던지고 그래서 급식식판 머리에 쏟고 국 뜨겁잖아요 그거에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두 학생 두 친구 다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한 친구는 즉사하고 한 친구는 병원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거 같은데 그 학교 선생님들도 외면했어요 되게 공부 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그런 학교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 신경 쓴다고 다른 애들한테 뭐라 하면 공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선생님도 그냥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나쁜 거 같아요

5)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2011년 / 경기도 평택시 M고등학교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사례31>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저는 올해 초 자퇴 신청이 접수된 현 나이 19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처음 담임선생님과 만날 때 가벼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라던지 부모님의 직장 등...그런데 친구들이 장난으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란에 ‘저는 게이입니다’를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설문지를 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 저는 중학교 때부터 소문을 달고 살았는데요.(첫사랑이 중학교 3학년 때였고 저는 그게 말 그대로 첫사랑인 나머지 제 사랑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권활동 문제로 교무실에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설문지를 꺼내신 겁니다. 딱 보고 알았죠 애들이 장난쳤구나. 세다가 아니라고 부정하기에 이미 늦은 것이 선생님께서 이 얘기(제가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전화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이해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인을 했습니다. 거칠게 없었달까요. 조금은 성급했던 감도 있지만 그 때로 돌아간다고 숨기진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숨겨왔지만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웬지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할 점은 이 상담이 다른 선생님도 계신 교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방금의 얘기는 다른 분들께도 들렸고 교무실 전체에 퍼지게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아웃팅, 커밍아웃 등등... 저희가 그런 일로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 외에는 학생들에게 당한 일이 대부분이죠 가벼운 도둑질(필통, 교과서 등이 필요하면 주로 제 것을 훔쳐간다던지)에서부터 책상과 의자를 넘어뜨려놓는다거나 교과서와 책상, 의자 등에 게이\*\* 같은 욕설들을 적어놓기도 했고 뒤에서 종이를 뭉쳐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학교를 다니는 2~3년 동안 쭉 지속되어 왔죠 심지어는 단순히 제가 뒷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서 병원까지 간 적도 있고요. 길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넘어진 저에게 침을 뱉기도 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그것은 극도의 소외감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2009년 / 모 고등학교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 아웃팅(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일).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원하지 않는 커밍아웃이 이뤄지는 것은 해당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된다.<sup>6)</sup>)에서 기인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한 개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낙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과롭힘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은 아웃팅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피해학생들은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식 식판을 머리에 쏟고’, ‘아무 이유 없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심지어 병원까지 갈 정도로 맞는

6)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PHPSESSID=7769d608d2cab29e38f3476cb24de83](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PHPSESSID=7769d608d2cab29e38f3476cb24de83))

등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는 2~3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내내 지속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개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큰 특징은 학교와 교사가 피해학생을 쉽게 외면, 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가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교사는 오히려 나은 축에 속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학생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알았을 때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교육적 책임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동성애 정체성을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거나 학생으로서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도'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사에 의한 아웃팅의 결과는 부모의 폭력이나 또래의 따돌림, 학교에서의 차별이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다루겠지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또래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적절한 도움 받을 곳 없이 방치된 성소수자 학생은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퇴를 선택하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른다. 설사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교육과정을 끝마친다고 해도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를 남긴다.

#### 4.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의 유형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특징은 이들이 단지 또래 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만이 아니라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 혐오발언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차별사례 팀에 접수된 사례 중 또래 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것이 40%였으며, 나머지는 교사, 학교의 교칙에 의한 차별이었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크게 나누어 보면 1) 학교,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 2) 또래 학생에 의한 차별과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학교,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

###### A. 교육제도, 구조적인 성소수자 차별 - 교과서 내 차별적 표현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개별 가해 교사의 문제, 또래 학생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의 문제다. 따라서 소수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사회,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와 교육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제도 하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교과서 내의 차별적 표현들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2007년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의 운영자(진기)가 조사한 것에서 발췌했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육인적지원부>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동성애가 그 중 한 형태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상업주의에 기인한다. (2000년 이후 개정)

###### 고등학교 체육 <금성출판사>

인간은 언제나 사회의 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성과의 동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와 같이 동성애를 '성도덕의 문란', '상업주의'로 보는 명백히 차별적인 내용은 꾸준한 개정 요구로 대부분 개정 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성애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성소수자를 비가시화하고 배제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적 내용은 교과서에서 흔히 찾아낼 수 있다. 교과서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강압된 성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죄책감과 좌절감을 심어 줄 수 있다.

##### B. 학교 교칙에 의한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 <사례18>

학교에서 땅리스트(동성애자 리스트)에 오르면 차별해요. 취업추천서도 잘 안 써주고 그냥 넘어갈 일도 한번 더 짚고, 한번 더 벌점 주고 안 좋게 대해요. 체육 선생님도 머리 짧은 애들도 진짜 싫어하고 저 머리 처음 짧았을 때 정말 싫어했어요.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게 뭐냐고 그랬죠

(2009년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사례20>

수업 시간 중에 갑자기 상담실에 소속된 선생님이 와서 제 친구를 불러내서, 교무실이라든가 그런데 그 아이를 세워 놓고 '다시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2006년 /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89p / 한국청소년개발원)

###### <사례21>

교칙이 바뀌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친구라도 손잡고 어깨동무, 팔짱 끼면 내신 -1점!" 애먼 애들이 많이 잡히겠죠 어떻게 손도 안 잡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음 말. "그리고 교감한 테 그 자리에서 걸리면 싸대기 맞는데!!!!"(중략) 머리 컷트라고 18일에 부모님 모시고 오래요

(2005년 / <10대 여성 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이지은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69p)

아웃팅 등으로 교사에게 성소수자임이 알려진 학생들은 고민을 해소할 만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다. 심한 경우 체벌, 정학이나 전학, 퇴학 등으로 이어지는 데, 이러한 학교 규율을 통한 차별,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는 2002년경부터 시작된 소위 '이반 검열'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성애자를 색출한다는 의미의 '이반 검열'은 벌점 등 불이익으로, 각서를 쓰라거나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교사의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C. 교사들의 폭언과 편견, 혐오발언

<사례7>

수학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지하철에서 게이들이 손잡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둘 다 남자더라. 더럽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고 다시 수업을 했다.

(2009 / 서울 은평구 모학교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례13>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광적인 기독교 신자이신 여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첫날부터 자기가 멕시코에서 살다왔는데 거기에는 게이랑 레즈가 많아서 정말 구역질이 난다는니 화가 난다느니, 돌로 쳐 죽여야 할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후략)

(2009년 / 모 고등학교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에 의한 차별과 폭력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폭언과 편견, 혐오발언이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관을 강요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발언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동시에 반인권적이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 2) 또래 학생에 의한 차별과 폭력

<사례32>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어쩌다 보니 아웃팅을 당했는데 그 소문이 난 뒤로 뭔가 악간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이여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고 이제는 엄청난 악소문들까지 퍼져버렸습니다. 다음주에 저희 학교가 축제 기간인데 “그 때 저녁 시간에 강당에서 불 끄고 공연을 할 때 칼로 찌를 거다”란 소리를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중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패닉상태입니다. 장난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고 자퇴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 / 모 고등학교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례38>

저는 여고에 다니는 동성애자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했고, 저의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절 자꾸 쳐다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굽지 못한 시선 때문에 밥도 먹질 못합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고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년 / 모 고등학교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또래 학생에 의한 차별과 폭력의 사례는 이미 “3.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실태”에서 다른 바 있다. 폭언에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물리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차별과 폭력의 수준은 심각하다.

차별사례의 조사과정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더욱 비가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사례는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성소수자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이성애 중심적인 성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통로조차 미흡한 실정이며, 이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두발, 복장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어긋나는 외모를 강요받아야 하기도 한다.

#### 5. 나가며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은 가해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과 사회구조의 문제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너무나 당연시 되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이분법적인 성규범, 다른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제도,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반인권적인 교육환경까지.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

지금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곳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차별과 폭력 아래에 이들은 그야말로 방치되어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문제제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극단적인 결과, 물리적 폭력의 수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어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되는지 예민하게 살피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소수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를, 침묵을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활동은, 그리고 차별사례모음집은 이러한 침묵을 깨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였다. 가슴 아픈 사례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없다면 이들의 고통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제5조)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를 확인하고 있

다.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제21조)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제28조)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동의 없는 비밀 누설금지 등을 명확히 하였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배려하지 않는 학교의 현실이 문제임을 인식하며 이를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제29조),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제31조)을 포함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노력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강력한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며,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의 시행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는 학생인권의 향상과 차별과 폭력 근절에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의 구호처럼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과 각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겪었던 금찍한 경험들이나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더 이상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2004년 / 성남시 모 중학교 / 차별사례모음팀)

차별사례모음집에 포함된 사례에서 한 학생이 말미에 덧붙인 말이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그리고 학교의 변화를 위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이것보다 명료하게 정리한 답이 있을까?

참조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학생 권리 선언(안)<sup>7)</sup>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교육 당국은 모든 학생의 개성,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모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 존중을 포함하는 이해와 관용, 평화와 평등의 정신에 기반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이에 기반 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과 교직원,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학교환경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차별에도 노출되지 않고 교육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 정학, 퇴학 또는 강제적 자퇴를 시키는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2.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기반 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와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교직원은 이러한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시간을 포함한 모든 교육환경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발언 및 성소수자 차별·혐오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 및 과정, 지원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배울 권리가 있다. 모든 교재와 교과내용에는 성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 강화하는 주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생의 권리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7)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사례팀은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을 출간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학생 권리 선언(안)”을 제안했다. 성적 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성적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 선언안은 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조약과 관련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특히 UN의 전문가 집단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폭력과 차별 철폐를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문서화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을 참조했다. 이 선언 안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4.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학교 규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의 규율은 학생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이에 대한 표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학생의 존엄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해 학생을 차별, 배제하는 내용의 교칙이나 관행은 허용될 수 없다.

5.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완전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드러낼지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

6.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인권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의견을 추구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

7.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교육 당국은 성적 소수자 관련 도서와 영화가 학교에 차별 없이 공급, 비치되도록 하고, 각종 문화 활동에서 성적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하여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8.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차별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모임이나 단체를 조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근거한 이유로 이러한 모임을 부적절한 것으로 낙인찍고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9.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적 소수자 학생은 인권 친화적인 상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당국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 교육당국은 학생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의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이 선언의 모든 권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텔학교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의지와 이익에 합치하는 교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sup>8)</sup>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2012.1.25.)

### 1. 이주아동<sup>9)</sup>들이 경험하는 학내 따돌림현상들

학교 내에서의 차별행위의 종류 : 놀림→ 무시와 소외→ 물리적 표현의 단계로 구분. 구체적으로는 발음놀림, 피부색→나라비하, 소문퍼뜨림→협박의 표현, 소지품 빼앗아감, 발로 차는 경우 등으로 구분

#### 1)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차별 내용

<표 학내 차별 경험 >

내 용	있다	없다
	빈도(%)	빈도(%)
1) 나의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린 적이 있다	78(41.9)	105(56.5)
2) 나를 따돌리거나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없지?”라며 무시한 적이 있다	68(36.6)	115(61.8)
3)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다	57(30.6)	126(67.7)
4) 내 이름 대신 나라이름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린 적이 있다	47(25.3)	136(73.1)
5)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39(21.0)	144(77.4)
6)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28(15.1)	155(83.3)
7)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내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17(9.1)	166(89.2)

#### 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다른 아이들이 놀린 적이 있다

8) 이 글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외노협에서 시행한 ‘이주아동 교육권실태조사’의 연구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총 186명의 이주아동, 96명의 학부모, 67명의 담당교사, 전국 10개 교육청 공무원, 5개지역 NGO 담당자들이 응답했던 설문과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이주아동들의 한국내 교육권 보장실태를 종합적, 다면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연구결과를 좀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트에서 연구보고서 전문을 보면 된다.

9) 여기서 이주아동이라 함은, 부모가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오거나 부모가 한국체류 중에 태어난 아동을 말한다. 이들의 부모들 중에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이 허용되는 비자를 갖지 못한 부모들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중에 본국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자녀를 초청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된 새로운 유형의 이주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을 받은 경험을 고등학교 48.6%, 중학교 45.7%, 초등학교 37.2%로 고등학생이 놀림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말 못한다고 웃어요 조개요. <V, 태국, 남, 중3재학>

#### 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없지?"라며 무시당한 적 있다

무시와 소외의 차별의 내용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없지' 하며 무시당한 경험은 고등학교 45.7%, 중학교 44.3%, 초등학교 26.9%로 고등학생이 무시당하는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네 나라 사탕 있나? 해있나? 차있나? 너네 나라는 다 똥그란 집에 사나? 그렇게 말했어요. 지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나 생각했어요. 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요 너네 몽골나라 발전 안 된 나라 라면서 얘기했어요. 한국말 하는 몽골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마음 고생은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발전된 나라지만 교육 뭐 그런 거 높고 그런 거 같은데 몽골보다 생각 수준이 낮은 거 같아요. 다른 나라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몽P, 18세, 여>

애들이 많은 곳에서는 꺼려한 것 있어요. 하늘 있나, 나무 있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처 받았지만, 터를 안 냈어요. <AO, 고1재학>

말하다보면 가끔 더듬거나 가끔 발음이 안 좋거나 하면 놀리기도 하는데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발음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니니까 별로 없는데 중학교 남녀공학 다닐 때는 남자애들이 몽골에는 뭐 없지 뭐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했었어요. 몽골에는 초원만 있는 줄 아는 애들도 있고, 여자애들은 궁금해도 비교적 조심해주는 게 있어요. 신고까지는 아니지만 초6때 어떤 남자애가 불법체류자라고 하고 옆에 있던 여자애가 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내가 비자 없다는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O, 몽골, 여, 고1재학>

#### 다.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다

무시와 소외의 차별의 내용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림'에

대한 경험은 중학교 38.6%, 고등학교 28.6%, 초등학교 25.6%로 중학생이 수군거림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리는 애들 있어요. 그럼 이야기해요. 하지 말라고 계속 하면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방법 없어요. 비자 없어서 문제생기면 안되니까요. <S, 몽골, 남, 중2재학>

#### 라. 이름 대신 모국명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라이름을 빗대어 '야, 몽고', '야, 베트콩' 등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으로 놀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중학교 28.6%, 초등학교 24.4%, 고등학교 22.9%로, 중학생이 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

친구 R하고 같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내가 몽골사람인거 (학교 아이들이) 몰랐는데, R과 아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애들이 (내가 몽골사람인거) 알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몽골계, 몽골인'하고 놀려요. R이랑 놀고 있을 때도 '몽골인끼리 잘도 놀고 있네.' 하고 (아이들이) 놀려요. (울음) 우리 친구들이 따돌림, 왕따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왕따 시킨 애에게 그 기분 느껴 보라고 그 아이를 왕따 시킨 적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랑 놀고 있어요. 저랑 안 놀고.. <AH, 몽골, 여, 초4재학>

아프리카에서 와서 까맣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학교 안에서 안 건들고 학교 나오면.. 외국사람이니까 말투가 좀 티ップ고 문화가 특이하고 그러니까 따껍다고 <V, 태국, 남, 중3재학>

필리핀에서는 외모가 한국아이 같다고 놀려요. 이상해요. 필리핀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반대로 놀리고.. 그래서 힘들어요. <AL, 초3재학>

아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애들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자기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요즘에 학교 가기 싫어해요. 나는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왜 친구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몰라서 그런지, 몽골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친구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몽골, 중2재학, 남학생의 어머니>

선생님이 우리 딸 놀림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설명했어요. 유치원에서 버스타면 아이들이 머리를 꿀밤 때리고 그랬어요. 필리핀에서는 머리가 가장 중요해서 때리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필리핀 초등재학>

여학생의 어머니>

마. 다른 아이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차별의 직접적인 언어표현으로 ‘돌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경험은 고등학교 25.7%, 초등학교 21.8%, 중학교 18.6%로 고등학생이 직접적인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4분의 1은 외국인인줄 알고 있어요. 많이 아는거 싫어요. 싸움하면 나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해서 싫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AC, 몽골, 여, 중2재학>

친구들과 친하길 한대요 ... (같이 있던 어린 아이들 눈치 보면서) 얘네들 나가있으면 안돼요? (나간 후에) 형들이 부를 때 있어요. 그리고 넌 여기 왜 왔어? 나네 나라로 가. 비자 없으면 나네 나라로 가. 그래요. 친구들도 그런 적 있구요. 선생님한테 한번 신고한 적 있었는데, 나보고 그애들이랑 싸우기도 했는데, 너 비자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너 등록이 없잖아. 너 여기서 나가면 다른 학교 못가. 비자 없어서.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넌 비자 없으니까. 여기 학교 말고는 갈데 없다고 그랬어요. (담임선생님이 야?) 아니요. 교무주임이에요. 눈물났어요. 억울해서요. 왕따시키는 것 같고.. 다치거나 사고 나면 병원에 가도 등록번호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W, 몽골, 남, 중 재학>

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차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으로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인’ 경험은, 초등학교 21.8%, 중학교 11.4%, 고등학교 8.6%로 초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친구가 칼로 뭐하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나를 그어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갔어요. 선생님이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를 병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엄마한테..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국학교 부모가 우린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아빠가 병원비 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슬펐어요. 내가 당했고 나는 피해자인데 병원비도 내주고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도 했지만 그냥 그애 집 가정형편이 진짜 어려워서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동W, 15세, 남>

남자아이들이 발로 쳤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분 좋지 않았어요. 뒤에서 쫓아 다니면서 괴롭혔어요. <C, 몽골, 여>

처음 한국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초등학교 9살 때 1학년 들어갔어요. 이름도 다르고 차별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가 다른 학교에 다녔어요. 옮긴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만 알고 몽골 아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한국말이 서툴렀는데 사투리라고 속이고 그랬어요. 4학년까지 다니다 몽골 왔어요. 그리고 중 2학년 때 한국 가서 한국학교 다시 다녔어요. 엄마인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와국아이들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어요. 난 러시아에서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차별 같은 거 못 느꼈어요. 한국아이들이 자기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몽A, 18세, 남, 어머니>

1년 전에 몽골아이들 때리는 것 보고 00가 가서 말렸는데, 보고 있던 한국아이들 30명이 달려와서 00를 집단으로 때려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00이 경찰서에 있을 때, 00선생님(대안교육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내가 비자가 없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00선생님하고 몽골아이들과 같이 갔었어요. 한 몽골아이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는데 그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몽골아이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00선생님이 못하게 해서 안했어요. 00선생님이 다친 몽골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조치하고, 몽골 부모님들과 경찰서에서 도와줬어요. 그때 찍은 영상 때문에 00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해결됐어요. 안 그랬으면 더 심각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원래 그래요.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 싸움 한번 걸어보고, 기를 잡으려고 해요. 한국아빠랑 결혼한 다른 아이가 왔을 때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몽골, 중3재학, 남학생의 어머니>

사.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차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으로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은 초등학교 10.3% 중, 고등학교 8.6%로 초등학생이 좀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제결혼가정, 아주가정 학생들의 생활배경에 대한 이해

### 1) 아주배경의 아동들의 생활배경

한국인 아동들과 같은 토대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아주민의 특성(피부색/머리카락색/국적/종교 등),

저소득층인 부모(2007년 보건복지부 조사, 다문화가정 60%가 월 수입 200만원 이하)

생업에 종사하거나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부모,

미등록(이른바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겪는 불편과 불이익,

유창하지 못한 한국어→한국어로 진행되는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학교환경

### 2) 아주배경 아동들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까?

<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내용	그렇다 빈도(%)
1)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	66(36.1)
2)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	55(30.2)
3)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학교 문화가 다른 것	52(28.6)
4)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	51(27.8)
5)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49(26.7)
6) 학교수업료 부담	46(25.2)
7)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되는 것	34(24.0)
8) 경제적 이유로 취업	33(18.0)
9)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모국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	27(14.7)

### 3) 차별과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아주배경 아동들

- \* 처음에는 피해자 :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도움을 받기 힘들 때,  
다음에는 가해자가 되거나, 부적응아동이 되어 학교를 떠나거나
- \* 아주노동자의 자녀일 경우 정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으면 귀국.
- \* 부모 중의 한쪽이 한국인일 경우 귀국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

### 3. 국제결혼가정, 아주가정 학생들이 학급에 미치는 영향

이 질문은 아주아동들이 학급에서 어떤 존재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아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반평균’이 66.7%로 가장 많았고, ‘교과진도’에서 41.8%, ‘이주아동을 위한 개별지도’에서 40%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27.3%나 되었다. 반면, 아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학급의 다문화감수성’이 77.6%로 가장 많았다. 즉, 아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학급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지지만 ‘반평균’은 낮아지고 ‘교과진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교사들은 보고 있었다.

<표 이주아동이 학급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영향	전혀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합계	학교급
반평균	빈도(n)	44	20	2	66	초등학교
	퍼센트(%)	66.7	30.3	3.0	100	
교과진도	빈도(n)	28	34	5	67	초등학교
	퍼센트(%)	41.8	50.7	7.5	100	
이주아동을 위한 개별지도	빈도(n)	26	14	25	66	초등학교
	퍼센트(%)	40.0	21.5	38.5	100	
행정처리	빈도(n)	18	41	7	66	중·고등학교
	퍼센트(%)	27.3	62.1	10.6	100	
학급의 다문화감수성	빈도(n)	4	11	52	67	초등학교
	퍼센트(%)	6.0	16.4	77.6	100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급과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아주아동은 반평균에 큰 손실을 주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아주아동이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학력신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반평균을 저하시키는 아주아동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있다. 그러나 시간과 상담 외에 특별한 해결방법은 없었다.

##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sup>10)</sup>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I.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과 학교 실적이 현장실습생들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고 있다.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고3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 김OO학생은 평소 병치레 한번 없이 건강하고,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4개나 딸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고 활달하였다. 가정형편을 생각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자 만 17세(1993년 11월 생)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8월 29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 현장실습 배치를 받았다.
  - 김OO학생은 같이 현장실습 온 109명 학생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주당 46시간 노동 규정, 심야노동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 임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다. 김OO군의 경우 온갖 유가용제 가스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일해 왔다.
- 이는 18세 전후의 청소년들이 버티기 힘든 살인적인 노동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럴진대 더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에 파견된 수만 명의 현장실습 학생과 취업 학생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열악하겠는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무리한 노동과 인권 침해는 현장 실습생과 취업 학생들에게 현장 혐오감과 현장 이탈을 야기하여,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전교조광주전남지부 성명서, 2011.12.21)
- 현장 실습은 참여정부 당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실질적으로 폐지 되었으나, MB정부 들어 산업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활되었다. 또한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고 있기에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어린 학생의 눈에 현장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또한 노동이 결코 보람되고 아름답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의 전쟁이고 고통이었다.

- 이런 가슴 아픈 바탕 뒤에는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는 후진적인 산업구조가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철폐를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자본과 정부의 탐욕스러움과 무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학습권, 노동권, 인권마저 박탈당한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이

1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05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업계고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주제이다.

있었다.(전국금속노동조합 논평, 2011.12.21)

이것은 한 학생의 불행이나 운 없는 사례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현장 실습제도, 소위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아래 '현장실습 정상화 운영방안'폐지라는 폭력적인 조치가 만든 필연적인 비극이다.

###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의식불명 사건 개요<sup>11)</sup>

가. 현장실습 피해 학생 : 전남 영광실업고 자동차과 3학년 김OO (만 18세, 1993년 11월생)

가족 관계 - 부모, 1남 2녀 중 셋째

- 학생 부친 바라는 사항 : 피해 학생 소생,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나. 현장실습 업체 :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본사 모집) 차체 3부 도장과 상도 A반

- 도장 파트는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과정으로 얼마 전 기아차 광주공장 도장파트 노동자가 백혈병 발생으로 산재 판정 받음.
- 기아차 제공 양식에 의거 실습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동의서 상 실습내용 : 완성차 생산을 위한 조립 등을 실습한다) - 도장은 조립이 아님, 협정 위반 (감독 소홀)

다. 실습근무일자 : 2011년 8월 30일 ~ 12월 17일 뇌출혈

라. 피해 실습학생 근무시간

12일(월)	13일(화)	14일(수)	15일(목)	16일(금)	17일(토)
10.5시간	10.5시간	10.5시간	10.5시간	10.5시간	8시간

\* 회사는 주당 58시간을 주장했으나 노조 측의 근무일지 확인 결과 72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표에서도 학생이 일요일 특근을 하였으면 70시간을 넘겼을 것임.

\* 추석에도 근무함.

마. 사건 개요 :

- 12/17(토) 08:30 ~ 17:30 토요일 특근 후 오후 8시경 기숙사에서 두통을 호소, 병원 가던 중 경비실 앞에서 쓰러짐. 한국병원, 전남대 병원 등 119차로 이송
- 12/18(일) 새벽 1시경 광주기독병원에서 뇌출혈(지주막하)수술하였으나 의

## 식 불명 종

## 바.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실태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본사 모집
- 8월~2월 (전문계고 학생), 3월~8월 (전문대 학생) - 현장실습생으로 1년 순환 구조
- 노동 시간 : 주당 58 ~ 70시간 정도 (24시간 주.야 맞교대로 노동 강도가 쌤)
- 광주공장 생산량 35만대에서 현재 약 45만대로 증가하면서 6년간 정규직 고용 1명도 없이 비정규직과 현장실습생으로 빈자리 채워 옴
- 광주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3학년 2/3이수 후 취업 전제로 한 현장실습만 허용' 지침에 따라 기아차 현장실습생 1명도 없음
- 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으로 되어 있어 7월부터 취업 불문하고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무차별적으로 현장실습 파견

## (전남도교육청 도의적 책임 문제)

## 사. 기아자동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문제점

- 노동법 위반 (18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 - 고3 현장실습생이 93년생으로 미성년자 해당  
(근로기준법 제67조) - 미성년자 노동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68조) - 미성년자 심야노동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성년자 유해, 위험사업장 노동 금지 위반 - 도장 유해화학물 취급
- 학교와 회사 간 체결한 표준협약서 변조 : 표준협약서 8조도 원래 정부에서 고시한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초과 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 금지 내용'을 '연장수당과 휴일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50/100의 수당을 지급 한다'고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가능하게 바꿔 놓음. (학교 즉 방관 책임 문제)
- 자동차 공장의 24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등 후진적 노동착취형 구조  
12월 16일, 한국GM 부평공장 주야 2교대에 의한 과로사로 보이는 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 기아자동차공장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11월 9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심야근무의 발암요인 유해성 지적, 주간 2교대제 개선 권고  
2011년 유성기업 파업 사태 등 자동차 노사 문제의 쟁점

## 아. 현장실습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도교육청, 학교의 문제

- MB정부 2008년 현장실습 부활(2006년 현장실습정상화방안 폐기) : 과거의 문제 다시 발생  
참여정부 : 인권단체와 전교조의 노동착취, 인권, 학습권 침해 등 지속적 문제 제기와 05년 실습생 사망 사고로 06년 '2/3 수업 이수 후 취업 전제 현장실습만 허용' 하는 정상화 방안 마련
- 교과부의 무리한 특성화고 취업률 요구 압박 :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취업률 : 10년 19% 달성함, 11년 25%, 12년 37%, 13년 60%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  
취업률 목표 미달하면 일반고 전환, 학교 통폐합 등 체제 개편과 장학금 차등 지급 등 압박
- 교과부, 고용노동부, 도교육청 실적위주 행정 :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초래 및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침해  
(현장실습생은 3학년 2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잔류학생이 시험에서 유리함)
-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이 없거나 형식적 교육
  - \* 교육과정에도 없고 전교조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에 맡기고 있으나, 무시되는 학교도 있고 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형식상 교육
  - \* 강원교육청의 경우 예산 확보하여 강원대 로스쿨 학생들을 활용 순회 교육
- 현장실습, 취업 학생에 대한 노동, 인권, 산업 안전 등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시스템 부재
  -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도교육청, 학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부재
  - \* 학교 담당 교사가 관리하기에는 전문성 부족하고, 잦은 출장으로 수업 등 소홀하게 됨
  - \* 학교도 교사가 수업, 담임 업무 등으로 현장 감시가 어렵고 전화상으로 고충 해결 수준
- 산업체의 인식 : 교육 목적의 현장실습이 아닌 저임금 단순 노동인력 대체 차원 인식  
(전공 무관, 저임금, 단순 반복 노동에 집중 배치, 산업체 가이드라인 없음)
- 현장실습생의 신분 :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닌 제3의 신분으로,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

-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숙련으로 인한 산업 재해 발생 위험 높음
- 현장실습생, 취업생에 대한 저임금, 노동 착취, 인권 침해 => 현장 혐오감, 현장 이탈 야기, 취업 기피 현상 => 산업현장 인력 부족 악순환 반복
- 사고발생 처리 체계 미흡 : 사고 대처 프로그램, 학생 및 보호자 지원, 보상 체계와 학교와 업체 간 책임 소재 등 현장실습 시스템의 미흡
- 인력파견업체(아웃소싱 회사)의 현장실습 대행 문제
- 과거 (주)세원테크, 공고 실습생들을 노사 분규 회사 정문 사수대로 동원, 여학생들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II.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

### 1. 교육권학습권건강권의 침해 사례

-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제기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9.9)과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진정서(제목: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한 실업계고등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산업체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산업체 현장실습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진정, 2005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나타난 교육권학습권건강권의 침해 사례

#### - 교육권 침해 사례

-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 실종
  -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조기취업으로 이해
  - 성과위주의 현장실습 업체 선정
  - 형식적인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사전 통보 미흡
  - 교육적 목적과 무관한 서약서동의서의 작성
  - 실습 중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미비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미흡
  - 현장실습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미비 및 관리소홀
  - 불법파견 형식의 간접고용 현장실습 운영
- 학습권과 관련된 침해 사례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지침보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 파견업체에서 전공과 무관한 업무 수행
- 현장실습업체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미비
- 현장실습업체의 현장실습생 순환실습 기회 제공 미비
- 건강권과 관련된 침해 사례
-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노동 실시
- 열악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보장 의무에 대한 규정 미비
- 현장실습 업체의 실습생 보호·교육 의무 위반
- 현장실습 업체에서 정신적·물리적 안전사고 및 폭력 피해 발생

### 2. 2005년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 2005년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간접고용현장실습인권실태 보고'에 의하면 간접고용 형식의 현장실습은 대다수 실습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실습업체와 실제 실습생 사용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장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습생들도 업체의 성격,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실습을 나갔다가 △불법 장시간 노동 △불법 야간노동 강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불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실습업체 직원들이 실습생들을 사용업체에 떠넘겨버리고 기본적인 교육지원 의무조차 방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와 사용업체들이 공모하여 학생을 상대로 저임 노동력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문제점		
침해 주체	문제점	실습생의 목소리
이름 뿐인 실습업체 (파견, 용역, 사내하청업체)	실습장소 미파악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학교에선 몰라요.”
	실습업체 성격 미고지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실습계약 미비	“일하는 조건도 몰랐어요.” “서약서 쓰래요.”
	실습계약 위반	“계속 말을 바꿔요.”
	실습 아닌 실습기간	“자리 없다고 계속 기다리래요.”
	보호·교육의무 위반	“첫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책임 소재 모호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해요?”
실제 실습업체	불법 파견	“데려간 사람이랑 일시키는 사람이 달라요.”
	초저임금 노동	“실습생은 10% 떼는 거라던데...”
	장시간 중노동	“너무 피곤해서 씻을 힘도 없어요.”
	불법 야간노동	“밤에 일하기가 힘들어요.”
	휴일 강제노동	“일요일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통근시간(노동의 연장)	“기숙사 도착하면 밤11시에요.”
	쉬는 시간 미보장	“화장실도 교대로 다녀와야 해요.”
	위험 노동	“언제 떨어질지 몰라 무서워요.”
	정신적, 물리적 폭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성희롱	“남자직원이 기숙사 열쇠를 갖고 있어요.”
	부당해고(실습 중단)	“갑자기 그만두래요.”
	전공과 무관	“자격증 따면 뭐해요?”
학교	실습업체 선정 문제	“그냥 사인만 하고 나가래요.”
	추수 지도 미비	“학교에서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실습생 미보호	“실습 중단하고 돌아오면 퇴학이래요.”
	중단 실습생 교육 방치	“중단하고 돌아와서 학교 청소하는 게 전부였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권 침해를 감독하는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장실습의 근거 법률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습생을 받는 산업체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신하 교육청에, 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쁘고, 노동부는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경직된 말만 되풀이해 오면서 현장실습문제가 대두 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문제 해결을 해오고 있다.

### 3.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

-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취업 또는 저임금 단순 노동력 활용 통로로 약용되어 왔다. 현장실습생은 노동법의 보

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는 꼬리표에 간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 왔다.

- 지금의 현장실습제도는 실습생을 이윤을 위한 임시방편의 소모품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탐욕을 불러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주와 실질적인 노동관계에 있게 되지만 현장실습생은 실습 받는 학생 신분이 우선이어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법·제도적인 보호가 취약하다. 즉, 현장실습 담당 교사의 인식 부족, 노동부의 감독과 관리 소홀 속에 노동관계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전부이다.

- 현장실습은 본래의 취지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 부재, 현장실습 업체의 선정 기준 미달,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현장실습을 진행,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 법적 근로시간 초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은 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시기가 늦춰진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 1) 현장실습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로 사용되고 있음

-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학기 중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나가기 때문에 학습결손을 야기함.

- 학생들에게는 조기취업을 의미하고,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값싸고 말 잘 듣는 저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적 목적이 달성하거나, 최소한의 교육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움.

#### 2)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닌 노동과정

-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직장체험의 경험이 되기보다 학교 보호, 기업 내 노조의 관심에서 벗어난 ‘근무기간이 안정적인 저임금 단순노동자’

- 현장실습생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체는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음.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거나, 기업체에서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없이 곧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학교나 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사후점검이 없이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는 이미 교육이 아닌 전적인 노동과정임.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단순히 노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

#### 3) 노동현장에서 차별 받는 실습생

-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에 걸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오로지 교육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외면되는 일도 당함.

#### 4)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습생

-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실습생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을 제대로 못하는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전문계고 학생은 노동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오로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잡다업무 강요 등 단순노동인력으로 노동현장에 방치되고 있음

#### 5) 교육과학부는 속수무책

- 현장실습을 빌미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문제라며 아무런 관리감독 가능을 하지 못함. 교과부는 현장실습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형식적으로 사도교육청에 현장실습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별다른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단위 학교는 문서를 위조하여 편법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제도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교육과학부는 '현장실습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개설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의 일부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학생 신분이며 특별한 경우(산업재해보험금 적용 대상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현장실습이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임'(2005년 9월 22일 전교조의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신')을 밝히고 있으나 여론이 빗발 쳤던 2005년 한해 점검을 실시한 이후 복지부동임.

#### 6) 고용노동부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

-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현장실습생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당연히 자신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이러한 태도는 이번 기아차 사태에 대한 광주전남대책위와 광주지방노동청과의 면담(2012년 1월 12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제도는 교육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사태와 관련한 1차적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학생들을 보내놓고 관리하지 않은 선생들의 책임이 크다. 책임으로 치자면 교사, 교육청, 기아차, 기아차노조 다음으로 자신은 다섯 번째 쯤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를 고발하지 않았느냐(진보신당에서 고발한 건), 나는 억울하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나 사과는 하지 않겠다. 사과는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다.'

#### 7) 법률의 문제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교육적 관점의 부재 : 교육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음
  - 현장실습의 파행적 운영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업교육법')이라고 함이 현장실습에 관하여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기인함.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① 현장실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② 현장실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③ 현장실습생을 받는 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장실습이 교육인지, 노동인지, 교육이라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산업체가 지는 부담에 관하여 정부 또는 학교는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만일 노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노동시간과 노동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즉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을 교육이 아닌 단순한 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음. 다만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며, 산업체의 장에게 몇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는 소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법에서 유일한 통제장치로서 가능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하면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임. 즉 이 표준협약서에 의하면 현장실습은 "산업체에서 노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다만 전공을 고려한 부서에서 노동하게 하고, 순환하여 노동하게 하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임.

#### ○ 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의 부재 : 현장실습생의 근로에 대한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음

- 현장실습이 실제로는 학생들을 고용하여 저임금으로 근로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도록 하고, 나아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구타와 폭행, 성폭행 등까지 일어나는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러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에 대하여 보호 장치가 없음. 즉 직업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노동을 할 경우 노동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과 보호를 받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실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생은 교육생이고, 근로자가 아니며 실습생이 노동을 하더라도 이는 교육의 일환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즉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노동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아

니면 그것도 엄연한 노동이므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이 적용되어 실습생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임.

- 다만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계약에는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산업체의 장에게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협조하라고 하고 있을 뿐임.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기타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함.

○ 의무화 및 이수기간의 문제점 :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더욱이 최장 1년의 기간 동안 현장 실습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직업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음.

- 즉 창업동아리 활동,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체험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단순히 현장실습만을 의무화하고, 학교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직업체험교육의 다양화는 결국 구호에 그치게 됨.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학교를 비우게 되면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직업교육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그 기간이 현장실습의 목적, 효과,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길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이수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점이 있음

○ 감독 및 제재장치의 부재 : 현장실습생의 교육권, 노동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체, 학교 등에 대한 감독시스템 및 제재장치가 없다

-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예컨대, 아무런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전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로를 시키거나, 1월에 1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도록 할 권리 를 보장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등) 또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를 하게 하면서도 헌법 또는 근로기 준법 등이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표준협약인 현장실습계약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상적으로 현장실습의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을 직업교육법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현장실습생으로 하여금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 기타 노동권의 보호는 노동법에 의하여도 가능함.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 산업체에서는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현장실습생의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이 필요함. 이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업체에 보상보험 법이 1997년 8월 28일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동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음(법 제105조의3).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의 문제 : 산업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함.

- 산업체 선정기준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으나, 범위가 너무 넓어 교육의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단시 갑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이유로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 보내거나, 심지어 파견근로업체에 보내는 어차구니없는 일도 발생함. 이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임.

○ 현장실습 시행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 산업체로 하여금 정부나 교육기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장실습생을 맡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음. 결국 산업체에 대한 지원의 부재는 현장실습을 교육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장실습계약의 문제 :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나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계약상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산업체 및 학교가 실습생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도 많지 않음. 계약의 내용도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 실현 및 노동 보호를 위해서는 빈약함. 나아가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임.

### III. 현장실습정상화 방안

- 2002년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전문계고 현장실습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2005년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전문계고 현장실습생 인권실태 고발’ 이후 2006년 5월 교육부는 ‘전문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전히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마나 현장실습의 폐해를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방안은 현장실습시기를 3학년 2학기로 늦춘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 협약학과 등 산학협력사업에서 산업체 파견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 대상과 파견 시기 등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를 열어두고 있다. 또한 지침을 무시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론을 들어 과거와 같은 현장실습이 계속 강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0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서 이 조항을 악용하여 현장 실습을 조기에 내보내고 있다.

- 교과부의 “정상화방안” 발표 이후 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전문고 졸업생 2천명을 상대로 실시 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도 2003년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의 ‘현장실습 실태조사’와 2005년 네트워크의 ‘현장실습생 인권실태조사’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조사결과는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문계고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 부재와 현장실습 업체의 선정 기준 미달, 정해진 기

간을 초과하여 현장실습 진행,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작업환경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법적 근로시간 초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현장실습생들의 교육권학습권건강권은 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 외에는 교육부 정상화 방안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5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발표한 소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실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운영방안'의 즉각 폐지한다는 조치를 통해 특성화고 교사들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정상화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2005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는 한 마디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기취업의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양산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들어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5~월에 실습을 나가는 학교가 34개교(서울은 7월 16개교)나 되고,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노동 인권 침해, 법적 근로시간 초과 등의 문제 등 2005년 정상화 방안 발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급기야 12월 17일 광주기아자동차에서 실습 중이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의식 불명사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 IV.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 1. 우선적 해결 방안

###### 1) 실습생 노동권 보장

- 현재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인자가 명확하지 않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노동을 할 경우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현장실습에 적용, 제시하고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역시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 이처럼 실습생이라는 모호한 신분 상태는 실습생들을 인권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다만 현 산업체재해보상보험법에서만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노동법을 종체적으로 손질하여 실습생들에게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 또한 노동부는 당장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 직업교육훈련생이나 견습생도 노동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등의 보호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학교와 실습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 보호 지방위원회, 감독관청 내 청소년노동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각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청소년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산학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임금에 관한 부당한 차우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시간, 최저임금법, 공정임금법, 실업수당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을 통해 과도한 근무시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 후일 및 야간 근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습생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 2)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반복되도록 만든다.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부터 나온다.

- 더욱이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도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 특히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취업(현장실습)을 내보내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습생들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자기 인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면접요령이나 직장 내 예절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두 번의 방송수업이나 체육관 강의로 사전교육을 '때우고' 말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 산업체재해,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계고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 3) 현장실습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형태로만 운영하고, 현장경험(산업체 현장실습)은 그 파견 대상과 시기를 엄격히 정한다.

- 관련 산업체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교 내 학습, 현장 방문 학습, 특정 직무 체험 학습, 직업 탐색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현장경험(산업체 현장실습)은 1, 2학년 방학이나 3학년 수업일수 2/3 지난 시점이나 3학년 겨울방학 실시한다

- 산업체 파견 실습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습생의 실습 여건이 확실하게 갖추어진 기업에 한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파견 실습 허용
- 일본의 경우 현장실습은 듀얼시스템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실시하는데 기업개척담당교사 3명, 담당부장, 듀얼시스템담당교사 등 5명이 듀얼시스템을 담당하며, 2학년 여름방학에 3일 또는 10일간 현장실습일 하도록 하고, 겨울방학에는 3일간 이수하여 3학년 때 1년간 주 1일 기업으로 출근하여 기업에서 실습(방학 제외)하고 있다.

#### 4) 학교차원에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해 현장실습운영을 학교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노동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와 지방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센터 카운슬; sector council)과 노총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장실습을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 평가 등)한다.
- 북유럽 국가들처럼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토대로 지역적 또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관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깊은 연계체제를 구축 기관 간 네트워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고 학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 현장실습, 취업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과정에 산업체 및 노동조합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 핀란드에서는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고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 의무화에 앞서 정부 주도 하에 정부-기업-교육기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무리 없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과 더불어 현장중심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장경험의 경우, 현장경험이 도제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 도제훈련은 자격증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비구조화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경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명문화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직업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는 핀란드의 도제훈련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5)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노(교원노조, 노총), 사(경총, 상공회의소, 섹터 카운슬), 정(교과부, 고용노동부)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정상화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2. 근본적인 해결방안 - 현장실습의 폐지

**현장실습이 원래 취지를 상실했고, 원래 취지에 맞게 개혁하는 일도 불 가능하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이 과행적으로 운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장실습의 문제를 부분적, 미봉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실습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현장실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현장체험교육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노동의 체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현실에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실습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노동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 산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물적인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산업체의 실정이 교육적 현장실습을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점, 국가에 의한 부분적인 재정지원과 프로그램의 제시만으로 교육적 의미를 갖는 현장실습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재정지원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 그동안 과행적으로 운영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산업체와 학교들이 모두 익숙해져 있는 점, 부분적인 보완책만으로 노동 위주의 현장실습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 노동 위주의 현장실습은 여러 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노동의 체험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 학교 단위에서 실습업체를 충실히 걸러내고 실습업체에 인권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실습생을 받을 만한 업체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실습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갖는 현장실습을 제공할 만한 업체도 사실상 거의 없고, 현장실습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교육당국과 업체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 현장실습이 원래 취지를 상실했고, 원래 취지에 맞게 개혁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면, 폐지밖에 대안이 없다. '실습',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대안적 형태의 직업교육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V. 마치며

-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은 노동의 가치와 사회의 여러 모습을 선형 학습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경험을 통하여 어른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힘든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경험을 한다면, 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편견을 갖고서 정상적으로 땀 흘리며, 노력하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 어떤 동기를 갖든 10대의 경우 사회를 접하는 초기 경험이고 그렇기에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구체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노동보호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초기 인식들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 토론.

###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 주요 쟁점

1.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 어떻게 깰 것인가
2. 기해자 처벌 위주의 해법과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만드나
3. 학교폭력 해법에서 교사, 학생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무력한가
5. 학교를 넘어선 지원망 확충과 성찰적 사회문화 어떻게 만들까

## 인권 감수성과 긍정의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참교육 학교 만들기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교권도 존중된다.**

### 1. 정책 추진 방향

#### 가. 학교폭력의 대책 논쟁에서 원인 논쟁으로 전환 촉구

2005년에 이어 2010년 졸업식 알몸사건, 2011년 대구자살학생 사건 이후의 정부과 언론, 교과부의 대응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학교폭력과의 전쟁선포, 차별 강화 등 후속적인 대책만 확산하면서 학교가 폭력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학교폭력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매년 터질 때마다 마련된 대책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고 모든 책임을 학교나 교사, 가정에 돌리는 무대책, 무책임의 연속이다. 예방보다는 가해학생 격리 및 교사, 학교, 교육청장학사 등에 대한 차별 강화, 스쿨폴리스 제도와 공의요원 배치 등의 대책 논쟁에 매몰되고 있다.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문제행동이 왜 일상화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원인을 진단한 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논쟁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 논쟁도 개인적 특성(공격성, 인정욕구, 사회성 부족 등 또래집단의 역학)과 학교환경외적인 요인들(가족 붕괴, 폭력물게임 등의 소비, 경제적 빈곤 등)도 중요하지만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폭력, 따돌림, 학습거부, 교권침해, 부모공격 등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논쟁해야 한다. 이런 논쟁의 귀결은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구조,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와 협력의 학교문화,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과정 등 새로운 학교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 나. 어떤 폭력도 거부하는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강화

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 부실처리한 학교나 행정기관의 징계로 이어지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사후의 처리와 관련된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인간관계 속에서 차별과 배제, 폭력

의 문제에 저항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인권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교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보장이 없는 차별과 통제, 감시 위주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이라면 어떤 교권강화 방안도 폭력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관계를 인권친화적으로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생활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연수나 교육을 통해 비폭력대화기법, 갈등중재방법, 명상(마음공부), 자기갈등관리능력 등 관계회복을 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교사도 이해중심의 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 간 협력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생들도 학생회, 동아리 및 학교 밖 지역사회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폭력에 대항하는 능력과 관계회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도 향상되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

#### 다. 경쟁과 성적 자상주의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

MB정권 5년 동안 학교폭력의 형태와 발생 건 수, 학업중단 및 텔학교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폭력 문제의 원인은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고, 학급과 학급 간에 경쟁하고,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이다. 일제 고사로 학생을 줄세우고, 학생을 체벌까지 하면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이기적인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사들이 구조적으로 얹혀있다. 학생(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처지에 따라 차별되는 학교문화가 변해야 한다. 거대학교, 과밀학급, 교사의 행정업무과중, 획일적인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은 재미없는 열악한 학습환경과 비민주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적 통제로 학교와 교사, 학생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학교를 입시교육의 전쟁터로 만들고, 천문학적인 공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시켜온 교육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민주시민,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및 학교구조를 바꿔야 한다.

#### 라.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명상, 치유, 훈련의 교육센터 건립

경쟁만능의 MB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지쳐있고, 정서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할 친밀한 관계가 서로 배타적으로 되어 버렸다. 학생 간의 따돌림과 폭력,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간의 배타적 갈등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쉬고 싶어한다. 지나친 경쟁과 선발제도로 인해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관계로 일탈되고 있다. 여유와 놀이, 휴식과 학습, 자기명상의 공간과 시간 등 자기긍정의 힘을

기울 수 있는 공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학부모가 즐거워야 돌봄과 지지 학생들이 성장한다. 학교 내에 학생들의 휴게 공간도 필요하지만 교사, 학부모들이 상담 및 치유, 명상과 갈등해결 훈련을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치유와 갈등 해결, 분노조절, 비폭력 대화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마.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지도 메뉴얼 개발

학습부진 등 학습장애학생, 문제행동유발 학생, ADHD, 주의력 결핍학생 등 다양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과 메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왕따, 따돌림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 할 수 있는 학습부진, 학습포기,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가 심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경쟁과 1등 신화가 학교성적,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힘) 등에 따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면화되면서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되는 등 순환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이 구조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과 치유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갈등해결, 비폭력 대화능력, 문제학생의 조기 진단과 지도능력 등을 배양하는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복원, 신뢰회복 및 교육적 권위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다.

가해 학생의 경우도 범죄자라는 인식보다 개선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인간성에 대한 교육적인 신뢰에서 출발하여 공격성 등 내재된 폭력의식을 치유하고,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이나 반성적 활동 등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학교로부터 배움으로부터 격리하여 배제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무관용의 차별이 아니라 엄정하고도 적극적인 교육적 관점, 화해협력의 평화적인 관점에서 교육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복귀가 가능한 합리적인 교육별이나 대체교육, 대안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 2.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문제점

##### 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과정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때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추진해온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정책 명	내용
1995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04.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1차 5개년 기본 계획 (2005~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ul>
2007	학교폭력예방 근절 15 대 중점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학생별 대책 : 「대안 교육 센터」 위탁 교육, 보호 관찰 학생과 교사 1:1 멘토링 사업, 학교별 친한 친구 교실 운영</li> <li>△ 학교위험도별 대책 : 배움터지킴이, 전문상담교사 배치</li> <li>△ 피해자보호 대책 : one-stop 지원 센터, 민간 경비업체(KT 텔레캅) 안전요원 MOU체결, 「학교 폭력 SOS 지원단」 운영</li> <li>△ 관련 법령 개정 : 가해학생 부모 특별 교육,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책임교사 수당 및 가산점 부여</li> <li>△ 학생·학부모·교원 교육 : 년 2회 폭력예방교육</li> </ul>
2008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대위법 개정(학교폭력에 성폭력 포함)</li> </ul>
2009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전담기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 폭력추방의 날 운영,</li> </ul>
2009.1	2차 5개년 기본 계획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단위학교의 대응능력과 책무성 제고 △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li> </ul>
2011.7	폭력 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안전보호인프라 선진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li> <li>△ 학생학부모 지원확대 △ 민관협력체계 강화</li> </ul>
2011.11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 회의소집 요건(피해자 요청, 신고 접수시) 완화 △ 학부모 대상 홍보물 연1회 이상 제작 배포 △ 학교폭력회의록 공개</li> </ul>
2012.1	폭력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 기록 △ 굿바이 학교폭력 어풀 보급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 학교폭력 은폐 교사, 교장, 장학사 징계 △ 상담교사 1천8백명 배치 △ 반복학생 강제유급, 권리자퇴, 강제 전학 △ 년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li> </ul>

2009년 2차 5개년 계획(2010~2014)의 내용에 담겨있는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목표 지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내 CCTV(설치율) : ('09년) 58.9% → ('10년) 70% → ('11년) 90%

- \* 배움터지킴이(배치율) : ('09년) 26.8% → ('10년) 50% → ('11년) 70%
- \*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 ('09년) 40교(시범) → ('10년) 10% → ('11년) 45% → ('12년) 100%
- \* 단위학교 Wee클래스 설치학교수 : ('09년) 1,530교 → ('10년) 2,530교 → ('11년) 3,530교
- \* wee센터수(전문상담) : ('09년) 80개소 → ('10년) 130개소 → ('11년) 180개소
- \* 단기대안교육위탁기관수 : ('09년) 167개소 → ('10년) 200개소 → ('11년) 230개소
- \* 장기대안교육위탁기관수 : ('09년) 56개소 → ('10년) 80개소 → ('11년) 100개소
  
- \* 학교폭력 정보공시 : 1개영역 3항목('09년) → 5개 영역 31항목('10년)
- \*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 발생현황, 심의현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
- \* 장기위탁교육 wee스쿨수 : ('10년) 2개소 → ('11년) 10개소
- \* 특별교육이수 대안위탁 기관 : 단기 ('09) 167개소 → ('11) 230개소 / 장기 ('09) 56개소 → ('11) 100개소

2011년 7월에 마련된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보면 학생안전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당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2교대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시범학교를 2년간 총 8억원을 편성하여 10개교를 운영하고 전국 1경찰서에 1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학기당 1회이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2010년 150개교에서 2011년 하반기까지 309개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Wee프로젝트 3단계(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의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86개소)와 연계하여 가출청소년 등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2011년 Wee 프로젝트 구축현황을 보면 Wee 클래스 3,170개, Wee 센터 126개, Wee 스쿨 7교이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당경찰관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 및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으나 해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되풀이 되고 있다.

2011년 12월 대구의 자살 사건이후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 추진 방향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선 테 설치, 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지정 운영,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한 학기 1회 이상 교사-학부모 면담 정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강경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문제점

- 1) 언론, 경찰, 교과부 등의 처벌위주 여론몰이, 일망타진의 전쟁선포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2005년 부산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 2010년 졸업식 알몸 뒷풀이 사건, 2011년 대구 학생 자살 사건 등에서 보듯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관련 부처부터 언론매체까지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다. 사건 등이 사회여론화되면 전쟁을 선포하며 실태조사,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전국을 훑쓸지만 오히려 대다수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학생, 학부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방식은 폭력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눈 감고, 땀질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2) 처벌위주의 다양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매년마다 정학, 퇴학 등 처벌을 강화하거나 소년법의 연령을 낮추는 등 학교로부터 기해자를 분리하는 대책을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하시키는 처벌 대책에 치중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및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학이나 징계가 학교폭력의 유일한 대책이 되고 있다.

3) 학교,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교사와 교장, 교육청 장학사를 징계하겠다는 대책은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는 정부나 교과부의 무책임, 무대책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학교폭력이 줄어든 학교를 포상하는 방안 등은 오히려 생활지도마저 경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권위적인 학생생활지도나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학교폭력 예방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CCTV, KT텔레캅, 안심서비스,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을 예방인력 및 장비를 학교에 배치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가 학교안전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등을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기나 마약 소지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무관용원칙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경찰관제도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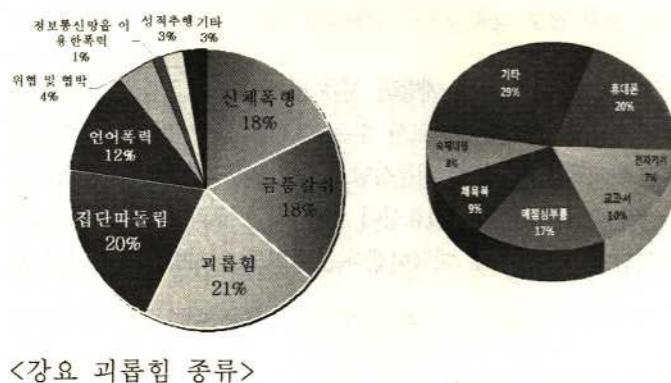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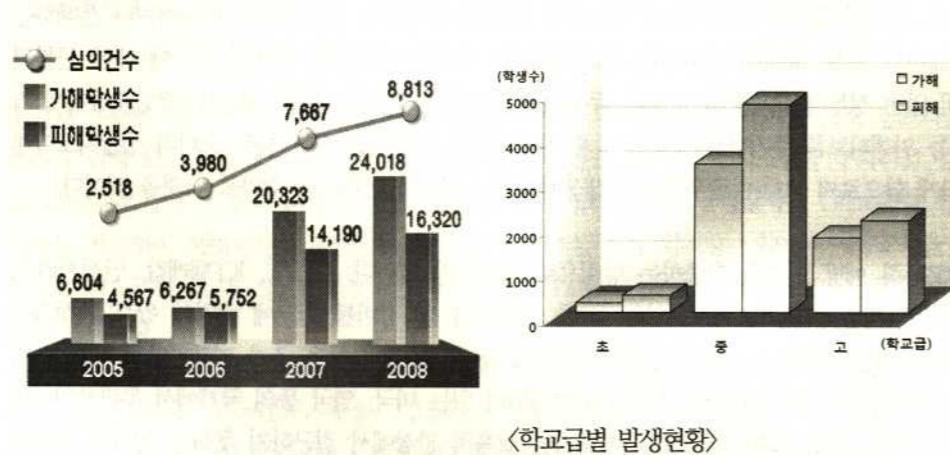
5) 상담전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력은 부족하다. 전국 1만 1300여개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수는 883명, Wee센터에 심리상담사 773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총량제 등 예산과 인력 수급의 문제로 실효성이 없자 최근 교과교사 중 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을 학교폭력담당 상담교사로 대체하겠다는 방안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 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결과(학생 실태를 중심으로)

첫째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학교폭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MB정부가 언론매체와 관련 기관을 통해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이 늘어난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

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07년 2만 1710건, 2008년 2만 5301건으로 증가하였다. 학교에서 정보공시(학교알리미)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거건 수를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2005년 2518건에 비교하면 2008년 8813건,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시절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중학교 학교폭력 건수도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5년 만에 3.7배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협박과 폭행 등을 넘어서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추세이고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집단적, 정신적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강요에 의한 괴롭힘(빵셔틀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인한 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MB정권 3년 동안 학업중단 고등학생이 10만명으로 하루 평균 87명꼴이다. 특히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7년 10,969명, 2008년 10,415명, 2009년 16,27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을 대

상으로 한 조사(2004)를 보면 교과에 대한 흥미 상실(43.9%), 친구, 교사, 학교와의 갈등(39.0%), 가정에 대한 불만(23.7%), 학교로부터의 자퇴압력(22.4%), 경제적인 문제(15.8%) 순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1년 고등학생 중퇴자는 5615명인데 학업중단의 이유로 왕따·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이 40%에 해당된다. 서울지역의 중·고생 32.5%가 학교중단을 고민해 본적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13.2%, 서울에서는 15.5%의 초중고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최근 6년간을 종합해 보면 전국적으로 29.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셋째는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사회적 역량이 OECD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끌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23개 회원국 중 3년 연속 끌찌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관적 행복지수의 경우 평균점수(100점)보다 34점이나 낮은 65.98점으로 끌찌에서 두 번째인 헝가리(86.7점)와도 20점이나 차이가 난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보면 36개국 중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0.31점(1점 만점)으로 35위이다. 지역사회단체와 학내 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 실적의 비중이 높은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이다.

또한 ICCS 설문에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한국 청소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해 참여국의 평균치인 62%보다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를 믿느냐는 질문에도 45%만 '그렇다'고 답해 ICCS 평균인 75%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

넷째는 2008년 이후 학생사망원인을 보면 1위가 자살이다. 10대 청소년이 하루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19세 청소년 자살자는 353명이었다. 하루에 0.97명이 자살한 셈이다. 자살의 원인도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통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왕따와 구타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가정 불화나 성적 비관, 이성 문제 등도 원인이다.

다섯째 일제고사 등으로 일제고사 등으로 인한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밥 좀 먹자!, 잠 좀 하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정보공시(학교알리미)로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등학생도 0교시수업, 보충수업, 야간 보충수업은 기본이고 놀토나 방학 때도 성적경쟁을 위한 학습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PISA 2010)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 공부시간은 8시간 55분으로 핀란드(4시간 22분), 일본(6시간)보다 월등히 많다. 학원학습시간, 보충수업 등을 제외하고라도 평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하루 7시간 49분, 중학생은 9시간 4분, 고등학생은 10시간 47분을 공부한다. 학원의 선형학습 및 문제풀이식 학교교육이 일상화되면서 학습동기마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라. [참고자료] 2012년 1월 시도교육감회의 학교폭력 대책 내용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불관용 원칙 도입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선도·보호 조치 △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집단따돌림·성폭력 사안 맞춤형 프로그램 즉각 투입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활동 강화 △ 학생교육원을 부적응 학생지도 기관으로 기능 확대</li> <li>● 학생 음부즈맨(학급당 5명) : 학생 신고, 해결방법 건의 * 학교폭력 책임 장학사제</li> <li>△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의무화 △ 전학 조치 실효성 확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학부모 동반, 학부모 소환제 의무화 △ 방송·미디어 선정성 및 폭력 성 영상 규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학생들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 '학교폭력 근절 One-stop 지원센터' 구축, 격리수용</li> <li>△ 위기학생 학부제 소환제 법정 장치 마련</li> <li>● 30~40대의 무술유단자 배움터 지킴이로 배치</li> </ul>
광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과 상담의 전문가가 되도록 함 △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학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 △ 실속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또래상담 학생동아리 100개 교사·학부모 생활교육 동아리 100개로 예방 등의 예방책</li> <li>△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전용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 △ 생활교육 우수학교 포상 △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기준 마련 △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움 △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 학교의 한계 상황을 적극 지원 △ 단위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 등의 지원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과 발달 차원의 교육과 학교안전망 구축의 이원적 접근 △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교사 또는 중재자에 의한 'Yellow Card' 제 도입 △ 위험군을 파악해 담임이 상시 밀착지도 관리 △ 학생 위험경보 제도 도입으로 사고 개연성 조기 차단 △ 가해학생 단호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 전 학교 학생 사고 및 치유 대응 매뉴얼 비치 △ 학생 행동 특성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교원 연수 △ 학부모 가정교육 연수 △ 학교, 가정, 사회, 언론 협력체계 구축 등의 치유 대책</li> </ul>
부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배급 △ 매일 20분 이상 조종래 시간 확보 △ 학교폭력 담당 교사 수업시수 감축 △ 학교폭력 책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유공교원 표창</li> </ul>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폭력 사안 공개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학급 담임 교사의 역할 강화 △ 가해자 교육 및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li> </ul>
울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폭력 조기발견 체계 구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책임교사 사기진작</li> </ul>
경 기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실태조사 및 학기초 집중조사 등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 25개 지역교육청 학생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 인권옹호관 운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사안의 합의적 조정 △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도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민영방송과 연계한 학생 인성교육 '사랑의 종소리' 운영</li> </ul>

충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도적 처벌기준 강화 △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의 안정적 지원 대책 마련 △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시·도 교육청내에 전문상담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범률 개정</li> <li>△ 학교폭력 징후·피해 신고 시스템 운영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전담팀 구성·운영 △ '행복4증주 공감 프로그램' 운영 △ 가해학생 선도규정 무관용 원칙 적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 능력 제고 △ Wee 프로젝트와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강화 △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학교폭력 예방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li> </ul>
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동체가 안심하는 학교 문화 △ 교사와 학생이 안정된 교실 환경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구축 △ 설문 및 상담의 주기적 실시 △ '신고·접수·처리'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속 처리 및 대응 체계 유지 △ 피·가해 학생 지원 내실화 △ 피·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 지원 △ 피·가해 학생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li> </ul>
전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은폐·축소 엄중처벌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선도조치 △ 학교 폭력 전담 시스템 운영</li> </ul>
전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별·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계 △ 학급 상담망 운영을 통한 신고문화 조성 △ 담임 교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지도 시스템 구축 △ 학생생활지도 중점학교 운영 △ 공립 기숙형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운영 △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한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센터 운영 △ 민관 지역사회 연합 찾아가는 학생생활지원단 운영</li> <li>△ 단위학교 학생생활지도 담당 업무 기피 현상 해소책 마련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 신속한 법적 절차 조치 요구 △ 정부부처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 감성교육을 위한 예·체능교과 시수 확대 △ 각종 교육정책 중 인지적·정의적 영역 예산 불균형 △ 5학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별도 정원 확보 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의 실현 요건 조성</li> </ul>
경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폭력 예방 교육 △ 학생 속으로 스며드는 생활지도 △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 지킴이 △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 △ 학생 자살 위기 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 치유단 운영 △ 학교폭력·성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단위학교의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 △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 맞춤형 고위기 학생 예방 교육</li> </ul>
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통한 인성 교육 강화 △ 노래·운동·책읽는 학교 등 3 가지 특색과제 운영 △ 친구사랑 운동 전개 △ 전통 예절 교육 △ 인성 교육 자료 개발</li> </ul>
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현황 및 계획 △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활용 인성 교육 실시 △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 다자간 소통 창구 개설·운영 △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사업 △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등</li> </ul>

### 3.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가. 독일 사례

독일은 1987년 학교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 ▷ 대규모 학교 설립의 불허용 및 소규모 학급 설치
- ▷ 교사 및 보육교사의 훈련을 통한 학습부진 및 행동발달상 문제를 나타내는 학생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 관료주의적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환경 개선
- ▷ 폭력 없는 갈등해소를 가르치는 수업
-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관련 이슈와의 연계 속에서의 수업
- ▷ 성교육의 조기 실시
- ▷ 체육수업 시간의 확대
- ▷ 청소년 폭력 및 범죄에 대한 교사교육
- ▷ 교사 - 학생 간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내 상담위원회 설치

2002년 4월 Erfurt의 Gutenberg Gymnasium에서 총기사고(12명 사망)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하였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여름방학까지 휴교조치 후 해당학교에 전문가 그룹을 투입하여 남은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에着手하였고, 청소년 무기취득 요건 상향 조정, 폭력영 상물 심의기준강화 및 안간존중의 교육환경 조성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 및 각 주 정부위원회(BLK)는 중장기 대책으로 Demokratie lernen&leben(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한다) 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단위에서 실천하도록 하였다.

#### Demokratie lernen&leben(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한다) 프로젝트

- ▷ 목적 : 학생들의 민주주의적인 행동능력을 높이고 민주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것
- ▷ 프로그램 영역 : '수업과 프로젝트', 학교문화와 학교조직, 학교 밖의 파트너와 협력
- ▷ 세부 주제 :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적 행동능력, 이해중심의 학습, 협동학습, 갈등해결의 방법으로서의 명상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민주적인 학교풍토, 함께하는 삶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풍토조성, 학교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자가평가, 서비스 학습, 사회도덕 교육, 자아효능감, 학교와 지역경제와의 연결,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결

#### 나. 일본 사례

일본은 1998년 이지메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체제 정비를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된 내용은 ▷ 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 사회성 함양 교육의 전개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상호 행동연계 시스템 구축 ▷ 문제행동에 관한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자기점검 ▷ 자기평가의 실시 등이다.

2004년에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의 충실,
- ▷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경 만들기 : 스쿨카운슬러, 학부형 상담원 배치, 학생들 변화 조기 진단, 학생지도추진 협력원 배치, 문제행동 발생시 서포트 팀 형성
- ▷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매너 및 도덕성 지도의 확립 : 정보도덕 교육, 가정교육수첩 가정요 비디오 자료 배포, 가정에서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보급

2005년에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 알기 쉬운 수업, 즐거운 학교의 실현과 인성교육의 충실
- ▷ 학생지도체계의 강화를 위한 교원의 자질 능력 향상
- ▷ 교육상담체계의 충실 : 스쿨카운슬러 배치,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원 배치, 학생지도추진 협력원 배치
- ▷ 학교폭력의 조기 방지 및 재발방지 : 학교, 가정, 지역, 관계기관의 연계(서포트 팀)

#### 다.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

독일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전문가들의 연구활동과 현장의 실천활동을 자기평가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생활화를 통해 동서독 이후의 학교폭력, 인종주의적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 독일도 90년대부터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교 폭력의 원인과 배경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은 정리하면 학교 내에서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 행위의 빈도와 강도 줄이기	수업시간, 학교구성, 학교분위기, 부모와의 협력성
- 학교의 외적인 환경 조성 (학교의 환경, 미적 아름다움 등)	- 교사들의 따뜻한 정과 관심
- 학교의 정서적 분위기 조성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서적 관계의 밀접성)	- 학생들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확고한 경계
- 학교에서의 지루함을 없애는 것 (특히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규범 위반 시 적대적이 아닌 그에 상응한 처벌 - 낙제생이나 문제 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도 및 관심 - 지식전달 외 가치관 및 정서교육 중요

일본의 경우도 한국정부와 같이 문제행동 중심의 대체(예방교육, 상담원 배치, 정보윤리교육 등)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학교문화 개선과 특히 학교수업의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포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운동에서 강조하는 협력수업처럼 등 쉽고 재미있게 함께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토 마나부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배움의 공동체'운동을 통해 공립학교의 20% 이상(3,000여개 학교)이 바뀌었으며, 일본의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에서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은 무관용원칙(정학, 퇴학 등 학교로부터의 결치체제, 처벌 강화)을 중심으로 스쿨폴리스제도, 금속탐지기 등로 총기소유가 가능한 사회상황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미국 내에서도 교육단체들과 연구자들은 강도 높은 처벌 즉 무관용 원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고, 학교로부터 격리된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힘을 갖게 하기 위해 학교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공격성, 파괴주의, 학습거부 등이 학습 및 생활체계로서의 학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라는 공간 공간 관심을 두고 일탈행위에 접근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고,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우선 학교 내적인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와국의 사례나 교육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문화 개선의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학생들의 개성을 수용
- △ 학습과정에서의 독자적인 활동의 고양
- △ 문제학생이나 결함이 있는 학생에 대한 관심 및 애정표시
- △ 지나친 경쟁 및 선발제도를 완화시키고 문제
- △ 결함 있는 학생을 열외 또는 소외시키는것을 피할 것
- △ 사회 및 문화활동 영역의 학습학교의 확대
- △ 학생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의 사용

#### 4. 전교조의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 추진 과제

##### 가. 교육제제 전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

###### 1) 경쟁주의의 학교문화와 평가 및 선발제도의 개혁

- 고교 무시험 전형 확대(연합고사 폐지, 선지원 후추점)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일제고사 폐지)
  - 초등학교 진단평가와 전국단위 일제고사 전면 폐지
  - 중학교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 이관
  - 경기도 논술평가제도처럼 논술형, 서술형 평가 방식의 도입
- 초등, 중학교에서의 절대평가방식의 도입
  - (석차 없는 성취능력 평가)
- 교사의 평가권 보장(평가 횟수, 내용, 방법의 자율권 부여)
- 수능 자격고사화(대학입시제도 개선)

###### 2)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및 수업방법의 개선

- 국가수준의 국영수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시수 감축)

- 교육과정 개편(지식교육 + 문예체교육 + 생태인권체험교육 등)
- 주5일제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180일, 주당 25-30 시간)
- 협력수업, 주제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교육, 봉사교육, 체험 교육,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교과수업보다 문화예술체육 등 재미있고 유익한 방과후 학교의 운영
- 강제 보충자율학습 폐지 및 학생선택형 자율학습 권장

##### 3) 민주적인 학교운영 및 민주주의 생활훈련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 교장선출공모제 확대(교원승진제도의 개선)
- 교육과 행정의 분리(교사 수업과 상담 전념하는 학교업무구조의 정착)
- 학생자치활동(동아리활동)의 보장
-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인권조례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 교사, 학생에 대한 생명존중교육, 갈등해결교육, 인권교육 강화
- 교무회의 및 학생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구조화
- 학교 수업 규칙 등 교사, 학부모, 교사의 공동체 생활 원칙 협의 (학교현장, 교육3주체 협약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 의무 합의)

##### 4) 혁신적인 학습여건 마련(인간적 규모의 학교와 활동 시설 공간의 확보)

- 학급당 학생수 감축(20명 이내)
- 대도시의 과밀학급, 거대 학교 문제의 해결  
(학교 내 스몰스쿨, 대안교육과정, 학년별 학교 등)
-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500-600명)의 건축
- 도서관, 체육관, 생태체험장 등 교육시설의 확충
- 학생복지를 위한 휴게공간(음악감상실, 동아리실, 토론방, 여유 공간)

##### 5) 배움과 돌봄, 책임의 혁신학교 확대 및 특목고, 자사고 정책 전환

- 남한산초등학교, 보평초 등 혁신학교 운영 사례의 보급
- 사교육없는 학력신장 학교 운영의 폐지
- 교육부, 교육청 지원 시범학교 운영의 정책 전환
- 특목고, 자사고 감독 강화 및 일반고(특성화)로의 전환
- 교육복지특별학교 등 정책지원학교의 내부형 공모제 확대
- 학생 모두의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 나.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 1) 학습지체, 부적응 및 장애 학생, 문제행동 등 소외학생을 위한 대책

- 학교 내 비교수전문인력(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돌봄교사 등) 확충
- 학습부진 원인 진단에 따른 학교, 교육청별 지원 방안 마련
-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 및 성취수준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충
- 문제 행동 유형 등 조기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 초등 1, 2학년, 중 1학년 학교부적응(학습지체 포함) 진단 및 지도 강화
  - 예방적 선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교사, 돌봄교사 확충(예비교사 등)
- 학교부적응에 따른 지역사회교육기관,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소외계층을 위한 교내 돌봄 및 지역사회 돌봄 공간 및 인력 지원

##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및 치유 공간의 마련

-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 갈등해결 능력, 비폭력대화기법, 학생대화법 등 연수
  - 학생인권,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교육
- 교사들을 위한 치유 상담 시설 마련
  - 교원의 자아존중감을 위한 명상, 치유 교육 및 휴 공간의 마련
  - 학습연구휴식년제 등의 마련
  -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질병 치료를 위한 시스템

## 3) 학교 폭력 후 대응방안

- 학교폭력실태조사 방식 보다 학교단위의 구성원 토론 활성화
- 학교차원에서의 학교폭력원인 토론 및 상부기관 지원 요구
- 학교차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메뉴얼 개발
- 가해 학생을 위한 치유,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 시설의 확충
-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 4)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 검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선,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의 내실화
  - 학교평화법 제정(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학교현장, 분쟁 및 갈등 조정 방안, 학교폭력 등 학생 치유 및 교육 방안 등)
- 학부모 책임제 강화 및 교육3주체 공동 학교생활협약 실시
- 학교부적응 학생 및 피해학생의 치유 및 상담시설, 대안학교의 설립
- 위Wee센타 내실화 및 청소년쉼터 등 학생상담, 자활 시설의 확대
- 법원, 경찰청 등 학교차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청소년의 차별과 교화를 위한 별도의 소년법원 및 교화시설 설치발

## □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참고자료 1]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혁신학교인 서울의 선사고등학교)

### 가) 교사의 약속

-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 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 ⑫ 항상 밝고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⑬ 일체의 촌지를 받지 않는다.

### 나) 학생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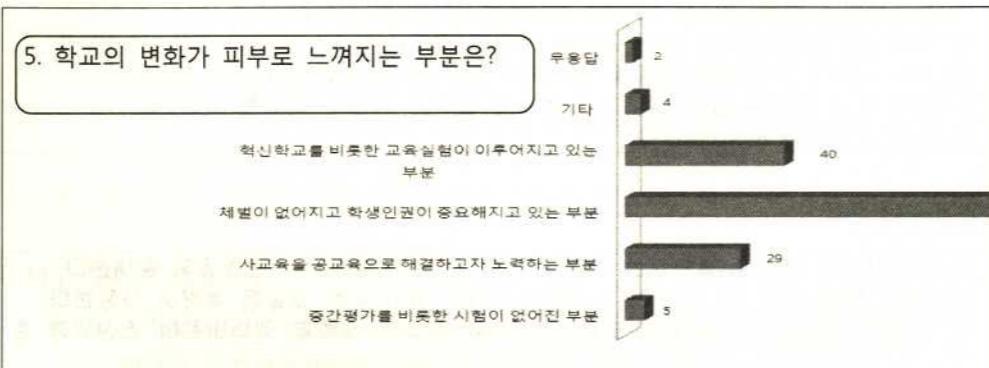
- ① 수업시간에 줄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있게 한다.
- ④ 학생 상호간에 옥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겠다.
-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분위기를 만든다.
- ⑨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 ⑩ 거짓말, 핑계, 내송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 ⑮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학부모의 약속

- ① 학교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한다.
-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 ⑨ 타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 ⑪ 춘지를 갖다 주지 않는다.
- ⑫ 학생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한다.
- ⑬ 잠을 충분히 재운다.

라) 학부모 설문결과 : 학교의 변화 대한 응답(2011.10. 1 조사 응답수 n= 172 재적수 240)



- 교사의 반응: 적용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자율규정이 자율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착되어간다고 평가함.
- 학생의 반응: 타율규정에 대한 엄격함은 호소하지만 자율규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잘 지키려 노력함.

[참고자료 2] 학생의 변화(학생의 인권)를 중심에 둔 생활지도 사례(흥덕고)

#### ○ 사제동행 교육별 제정: 안전한 학교 만들기(생활지도 방법) 집중토론 결과

- 학생의 분노를 자아내는 벌은 안 된다.
- 벌도 학생의 성장의 일환이어야 한다.
- 사제동행 성찰 벌을 도입한다.

□ 공동체적 삶속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공동으로 실시하는 아침 열기 공동 학급운영프로그램(2010년-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 주제별 통합기행 실시(삶의 기획력 및 자기성찰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 건강한 삶을 뒤돌아보는 매주 수요일 1년간에 걸친 봉사활동(장애인 마을, 실버 타운)
- 학생중심 수업혁신 결의 및 실천(전교사 수업개방을 통한 수업성찰 실시)
-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가동(상담 전문가 채용, 모래 치유 프로그램 등)
- 교사 및 학생 3무 3행의 실천으로 바람직한 학생생활문화 형성에 매진
- 공동체 생활 형성을 위협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기성찰 및 교육별 도입(운동장 뛰면서 담임과 대화하기(2010년), 광교산 성찰 등반(2011년), 지리산 성찰 등반(2010-2011년) 등)
- 학생자치역량이 강화 프로그램(학생자치 학교 등)
- 자기성장 프로젝트(주제별 통합기행(2박3일), 자기주도학습 방법 지도, 심성훈련(2010년 1학년 2박3일), 인문학아카데미, 자연과학아카데미, 인권아카데미, 진로아카데미, 각종 동아리 활동)

## 처벌과 보살핌 사이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학교폭력은 엉킨 실태와 같다. 순리적으로 풀어야 할 실태를 성급하게 잡아당기면 복잡하게 엉켜서 어디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그 원인부터 다양하다. 가정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경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위계적인 문화가 학교에 끼치는 영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원칙과 목표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를 돋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악만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함으로서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왜 다른 아이들(방관자), 그리고 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이 도울 수 없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와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는 왜 그들을 돋지 못했는가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언론과 정책당국 그리고 교원단체들의 대응이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럴 경우 그 폭력행동의 심각성만 선정적으로 드러내어 처벌위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애도와 그 곤경에 대한 감정이입은 이제 찾아 볼 수가 없다. 피해자의 아픔과 비극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社会의 힘 있는 사람들(교육부, 교육청, 경찰청, 교직단체 등)에게 너무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어든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오로지 피해자 돋고 방관자들을 어떻게 협동행위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라들에서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자.

1982년 노르웨이에서 10대 초반의 소년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별한 증거는 없었지만 동료학생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결과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되었다. 노르웨이 사회에서 심각한 파문이 일어났고 수상직속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회적 토론을 거쳐 1983년 가을에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교차원에서는 올베

우스 프로젝트를 사회 전제적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올베우스 프로젝트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학우들이 그들을 어떻게 돋고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호하며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진행방식도 어른들이 먼저 학습하고 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역시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의 성찰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당시 캠페인에 활용된 올베우스 프로젝트의 기본 자료 하나를 떠 올려보자. 한 아이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 아이는 실체감 없이 반투명한 형태로 화면에 등장한다. 그 아이가 교실에 있든, 학교로비에 있든, 강당에 있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식당에서 한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며 같이 앉는 순간 아이가 뚜렷한 실체로 등장한다. 그리고 자막이 나타난다. “왕따를 당할 때 멈춰를 외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편의 광고 자막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왜 아무도 대그(광고의 아이이름)를 도와주지 않는가? 우리는 이 폭력을 막을 수 없는가?”

“지금 교사는 이 폭력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이 폭력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가?”

“왜 아이는 매일 머리가 아픈가? 아무에게도 이 폭력을 말할 수 없는가?”

마지막으로 현 상황이 우리 연구소로서는 유감스런 측면이 있다. 우리는 2011년 8월에 경기, 광주 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일진화·일진문화의 실상과 예방대책’이라는 자료를 펴낸 적이 있다. 그런데, 2011년 말 중고등학생들의 잇단 자살사건 이후 기자들이 이 자료를 찾았고, 그 뒤 한 신문사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진문제를 10회가 넘는 연속기획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마치 봇물 터자듯이 일진 문제를 쏟아냈다. 우리가 일진자료집을 펴낸 까닭은 일진 아이들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왕따를 가능하게 한 교실사회관계를 분석하고 통찰하여 모든 사람들이 왕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살핌을 통해서 일진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사례와 여러 가지 제안을 담았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보수신문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경향을 띠는 신문조차도...

## 학교폭력과 학생의 권한

- 둠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친구라는 이름의 방패 만들기, 힘 재기

학기 초가 되면, 서로 모르는 이들이 가득한 교실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잠재적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전혀 안면도 모르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화장실에 가자거나,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며 친해지기를 시도한다. 그렇게 학기가 반쯤 지나가면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내가 소속된 그룹은 어디이고,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가 명확해 진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거나, 그런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게 마련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학생 간 폭력은 어떤 극단적 상황, 어떤 몸을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정말 평범한 이런 교실 속에서 시작된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학급 내에서 걸들고 은근히 무시당하는 왕따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일상적으로 극단적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 역시 포함된다.

학교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따라는 학급 내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인 경우가 더 많다. 혹은 정말 마음이 맞아 친해진 친구관계라 해도 언제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친한 애를 만들지, 애는 계속 나랑 같이 다닐 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된다.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리는 학생은 물론이고 ‘평균’ 수준의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의 사귐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너무 잘난 척 하면 안 되지만 찌질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찌질해 지는 순간, 친구를 잃고 한 랭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대개 학교 안에서 형성되는 그룹 내에서 혹은 그룹 간에는 보이지 않는 힘 재기가 존재한다. 어떤 애는 이 그룹 안에서도 누군가와 훨씬 돈독하고, 이 애는 가끔씩 피곤하며, 또 다른 아무개는 끼워 줘도 나쁠 건 없지만 빼놓고 논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것 없다. 이런 계산이 오고간다. 외모, 성적, 자신 외의 다른 교우관계, 교사의 신임 정도. 이 외에도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거스르면 안 될 사람과 좀 더 거만하게 굽어도 되는 사람을 선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

‘자금의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할 때, 이 힘 관계에서 우위에 선 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다. 대개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 ‘평균치’에서 모자르거나, 다른 많은 이들과 다를 때 학생 간 폭력은 일어난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학생 간 폭력을 주도하는 가해자 혹은 가해 그룹은 그저 힘 관계에서 자신보다 아래인 대상을 향해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 근거로서 가난, 외모, 성적, 성격 등이 들먹여진다.

어떤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던지 간에, 가해학생은 평상시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 이거나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학교의 특성,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경쟁하는 곳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폭력은 발생한다. 학교의 시스템이 주도하는 학업경쟁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기준으로 자리잡기 쉽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날 때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도를 재고 자신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을 익힌다. 자신의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보다 더 아랫사람을 만들어 안심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밖에서 바라볼 땐 별 것 아닌 사소한 결점, 혹은 사건이 폭력이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심심풀이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그러니까 끊임 없이 남과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억압하는 기재와 짜울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보다 밑에 있을 누군가를 만들게 된다. 인권적이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성실험인 셈이다.

### 열쇠는 학생의 권한

지금까지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주로 이야기 되어왔다. 요즘은 교사가 해결하기에는 짐이 무거우니 학교 안에 학생 간의 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을 두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점점 더 강하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엄격한 벌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요즘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 간 폭력이 심화되기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날라리’들이 죄 없고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광경을 매 한번 들지 못한 채 방관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 즉 교사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 학급 안의 분쟁이나 관계맺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은 앞에서 말했듯 학생들의 무력감에서 시작된다.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 교사가 엄벌만을 가한다면, 교사에게 심하게 벌 받는 일은 그저 재수없이 들켜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치게 된다. 교사가 발견하고 벌하지 않으면 잘못이 아닌 것이 되고, 현장에 같이 있는 다른 학생들은 자신에게 이 상황을 제지할 ‘권한’이 없기에 ‘참견’하지 않게 된다.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문화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써 제압하는 상황은 학생들 간의 관계의 회복이나 사

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폭력을 ‘들킨’ 대가가 벌로서 존재할 뿐 자신이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다. 교사는 교사대로 충분한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학급을 통솔할 수 없기에 부담이 늘어간다. 결국 학생 간 폭력에 ‘조치’는 취해지지만 ‘해결’은 없다.

학생들이 최소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자신과 남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학교는 달라지지 않을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윗사람의 처분이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팔을 걷어 부치고 해결하는 것이 당연해 진다면, 학생 간 폭력은 지금처럼 ‘난제’로 남아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 넘쳐나는 학교폭력,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 김선혜(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사회갈등분석팀장)

온 나라가 학교 폭력 문제로 들썩입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중학생의 문제에 이어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같이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러할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앞다퉈 학교 폭력의 현황을 알리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일부를 간추려보면, 경찰청은 보복폭력 가해자는 성인으로 간주해 일반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곳으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하고 그리고 피해학생의 요양비등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의 사설에서는 학교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 왕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사는 처벌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은 퇴학 등 극약처방도 불사해야한다고 합니다. 내놓는 대책이나 주장마다 분노와 결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서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답을 알지 못할 뿐더러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대구 중학생의 어머니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자살한 것 이)억울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가해학생들도 상응하는 벌을 받은 뒤 우리 아들의 몫까지 사회 봉사하며 살기를 바래요.”라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학교는 교칙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처벌해 줘야 그래야 이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리고 앞으로 다른 애들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하지 말아야겠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그러면서 가해학생들의 신상털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동생의 일로 충격받은 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어머니-실은 이 어머니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가해학생들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이 일로 상처받고 영향받은 사람에 대한 치유입니다. 관련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정부 각급 기관이 내놓은 대책은 처벌의 강화입니다. 교사와 가해학생 보호자의 단속 책임을 강화하고, 폭력행

위를 한 학생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입니다. 벌을 엄하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정부 당국 등에서 나오는 대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답은 가해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솔직히 숙제시키고 심부름 시킨게 뭔(무슨) 폭력이고(이냐?)”하는 문자를 주고 받기고 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찌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머라고 하지”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고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나 고통에는 둔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데, 죄가 있다고 하고 벌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흔쾌하게 받아들일까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도 이런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거나 학교가 편파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은 어떤 느낌 생각을 갖는지 그래서 내 행동이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 피해학생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분노, 절망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무서워 혹은 비난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피해자 어머니가 원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제가 만났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개교이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가해학생 얘기에 따르면 40시간의 특수(?)교육도 받고, 학교에서 별도로 반성문, 청소 등 징계를 일주일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자는 이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에서 내리는 처벌을 다 받았는데 왜 또다시 고소가 되었는지 답답해했습니다. 처벌이라는 방법으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 반 친구들 사이에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 일의 상처이고 손실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그 처벌로 그 책임을 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법원의 화해권고위원<sup>112)</sup>으로 소년법으로 불리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화해권고

기일에 만나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가해소년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난 뒤입니다. 물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더 민감하고 그래서 서로 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겠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이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피해자도 그렇지만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화해권고자리에서 피해-가해자 대화 경험을 통해서 저 스스로 배운 것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느낄 때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어”하는 마음보다는 “하필... 운이 없어서”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규칙을 위반했다”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교통 흐름이 막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차가 밀려서 늦는다거나 혹은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뒤의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필 내가”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학교 폭력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고 – 저하는 이것을 폭력 민감성이 라고도 합니다만 폭력에 서로 민감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 또 폭력 상황에서는 누군가 힘있는 사람에게 적발당하거나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저는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의 잘못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법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인가 아니면 내 행동으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이 잘못인가? 이 질문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어른들이 답해야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물자면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인지 가르치고 있는가? 그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는가? 떠들고 재잘대며 실수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배워가야 할 앗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이 차마 형언하지 못했던 고통과 가족의 상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먼저 답해야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생활협동조합 담임취학 회보에 실린 원고를 기초로 했습니다.)

12) 화해권고제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화해권고위원들은 당사자들 사이의 원활한 대화와 문제해결과정을 돋는 사람입니다. 화해권고제도는 2010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시작해 현재 의정부, 인천, 수원 지방법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주도 갈등해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모색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보장받거나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 권리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 것, 그 기준선에 바탕해서 학생간 갈등과 권리다툼에 대한 대처 방안, 교육활동 장면에서 예측 가능한 교사 학생간 권리 충돌이나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학생주도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고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 접근 방식 중 일환이 되어야 함.

### 1. 전면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침묵과 방관의 악순환 구조 →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행동 설계

#### 가. 예방

- 1) 실천 중심 예방 교육 강화 - 학년 초 학급 구성 시기 집중 실시
- 2) 학년 초 학급 회의 - 우리 학급 평화 규칙 만들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각각 5가지씩 제안, 협의, 합의, 결정 과정 통해 마련)
- 3) 학급 지키미, 학급 알리미 등 갈등 상황에 공식적 개입 자격을 갖춘 역할 마련
- 4) 또래 상담자, 또래 중재자, 또래 중조자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
- 5) 학생 갈등해결 조정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지원) 교사 양성,
- 6) 학년 교사 협의회 주1회 실시 - 학급 담임, 교과 담당 교사 함께 학급별 상황 공유, 주목해야 할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 방안 협의
- 7) 학교 공간 재구성 -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 거리 좁히기(중등 교사 사무실을 분산 배치하여 사각 지대 없애기, 화장실, 식당 함께 사용하기 등)

#### 나. 갈등과 위기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마련

- 1) 위기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학급 지키미(알리미) 활동,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비상) 벨 마련

- 2) 위기 상황 발생시 주변 학생들이 해야 할 행동 수칙 마련, 교육
- 3) 학생주도 갈등해결 대처 능력 강화하고 갈등해결 조정자 활동 공식화 - 또래 상담자, 또래 중재자, 또래 중조자 등
- 4) 학생 갈등해결 조정자 활동 교사 지원 체계 마련
- 5) 갈등해결 전담팀 마련 - 상담부(전문상담원 등), 학생부, 학년부, 교감

#### 다. 발생한 폭력에 대한 회복적 문제 해결

- 1)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 피해조사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안전 책임
- 2)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피해 학생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들에게 사과와 공개적인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함)
- 3)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권고한 경우 시행 (지속적 집단 과롭 힘, 따돌림 등 폭력의 강도가 높고 중징계를 받은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별도의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경우 전문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함)
- 4) 학급 학생 전체의 성찰과 회복 활동 - 학급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수 있게 안내 (동조자, 방관자적 태도 성찰,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우정의 관계 회복 노력)

### 2. 전면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주체별 역할

#### 가. 학생

- 1) 의사소통 기술, 분노/감정 조절, 다양성과 다른 의견 존중, 문제해결 기술 등 기본역량 강화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
- 2) 학생주도 갈등해결 조정자(또래 상담자, 중재자, 중조자 등) 역할 참여
-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강화, 학생주도 문제해결능력 강화 - 학생회 및 학생자치법정
- 4) 수업과 일상 교육 활동에서 친구들과 우정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 자기 역할나누기
- 5) 친구, 교사와 신뢰관계 맺어 평화의 학교 공동체 구축의 주체로 나서기

#### 나. 교사

- 1)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 학교 근무 시간에 학생들과 직접적 만남 시간 확대하기 (상담, 멘토링, 생활 나누기 등)
- 2) 학생 자치 활동 적극 지원 - 학생관 재정립을 통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
- 3) 학생 갈등해결 조정자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역할 수행
- 4) 교과 수업, 담임 활동 등을 통한 개별적 학생 현황 파악 노력 강화

- 5)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적 대처 방안 마련
- 6)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생활 교육활동 강화 노력

#### 다. 학교와 지역사회

- 1)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구축의 비전 마련
-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폭력없는 평화로운)학교 생활 규정 마련 - 각 학급의 학급 평화 규칙 논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학교 규칙 마련
- 3) 생활교육(지도) 교육과정 강화
- 4) 교사, 학부모에게 쓸모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실시
- 5)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화해와 회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6) 학교 공간 전체가 안전한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사들의 사무실, 특별 교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재배치
- 7)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원망 구축

## 인권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 :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금곡중 교사)

나는 12년 동안 교사로 살았다. 그전에 16년 동안 학생으로 살았으니 학교라는 공간에서 28년을 생활한 셈이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으니 학부모이기도 하다. 이렇게 따지면 학교와 무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도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100만 명<sup>13)</sup>이 넘는 학생들과 5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하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학교를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헌법 10조<sup>14)</sup>가 명시한대로 국가에게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1부의 집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다.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짐바르도는 그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 감옥실험<sup>15)</sup>을 시작했다. 대학생 자원자 24명이 무작위로 죄수와 교도관의 역할을 배정받았다. 2주를 예상한 실험은 6일 만에 '외부 관찰자'의 조언에 의해 중단되었다. 교도관들이 죄수를 폭행하고 심각하게 권위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죄수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자극히 정상적이며 어떠한 기질적 차이도 보이지 않았던 죄수와 교도관 집단은 상황에 의해 완전히 극단적인 행동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짐바르도는 "썩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썩은 상자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라는 '상자', 즉 폭력적인 학교문화는 정신 차리고 살기 어려운 '상황'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학교를 감옥에 비유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폭력적인 학교문화에서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있다. 심지어 교사들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썩은 사과'를 꺼내 버리는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는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다. 학생인권조례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1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덕장중학교 조원희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3) 교육통계연보(<http://cesi.kedi.re.kr>)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11,337,052명이고, 전체 교사 수는 551,326명이다.

1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5) 필립 짐바르도(2001). 루시퍼 이펙트. 이충호, 임지원 (역) (2007).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우리 학교는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없습니다. 돈을 빼앗는 일도 없고, 약한 학생을 놀리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기분 때문에 작은 다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평화로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한반에 25명, 학년별로 4개 반으로 학생이 총 200명밖에 안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 전체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잘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축구동아리에 들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축구를 자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서로 친해지고 공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풀어버립니다. 서로 친해지면 단합도 잘되고 싸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우리 학교의 두 번째 특징은 상담선생님이 계셔서 상담을 잘 해주십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기 전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학생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줍니다. 생활규정을 정할 때는 머리, 복장, 용모 문제를 학생 전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믿게 되고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히 선생님들도 좋아하게 되구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직접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학교는 별점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점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별점제도가 없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가 먼저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학교가 된다면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혁신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니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진짜 ‘교육’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교육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적어도 교육이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권의 존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유보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뇌’나 ‘교화’나 ‘훈련’일 뿐 ‘교육다운 교육’은 아니다. 혁신학교는 인권을 존중하고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감소시킨 것이다. 혁신학교의 모델이자 학교폭력을 해결해가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서유럽의 학교문화와, 아직도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의 학교문화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 깨닫게 된다. 우리에겐 이미 수많은 ‘외부인’이 심각한 조언

을 해왔다. 1991년 ‘UN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5년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근의 보고서에서 UN은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에 대해 심각하게(severely) 경쟁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전에는 매우(highly) 경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은 그 지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켜온 셈이다. 경쟁이, 그것도 심각한 경쟁이 과연 ‘교육’적일까? 이제 우리는 일제고사를 없애고, 인간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경쟁적인 평가 제도를 멈추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승진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을 교사가 아닌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교육같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교육권’의 행사를 통해 교학상장(教學相長)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국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인 당신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해왔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능력 없는 교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관리자와 교육청의 권위적인 행태에 온몸으로 맞서왔다. 나도 그랬다. 2010년도에 사춘기의 정점에 서있는 중학교 2학년 7개 학급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년부장을 맡아 280명의 이름을 3월에 모두 외웠다. 아이들은 “야!”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엎드려있는 아이의 뒤통수만 보고도 몇몇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인간적 관계를 쌓기 위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대화를 거듭했다. 동학년 교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문제를 토론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반을, 우리 학년을, 우리 학교를 방어해왔다. 그래도 학교폭력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교사는 지쳐가고, 날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부터 많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로 손을 잡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성적이, 공부가, 경쟁이, 아직도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에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을 가진 공화국의 시민이다.

## 학교폭력사건 해결과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지원망 확충의 중요성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 1. 짚어보기

#### 1) 학교폭력사건 해결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 학교장, 보직교사, 담임 및 교과목 교사, 상담교사, 부모 및 양육자, 청소년, 기성세대
- ⇒ 개별적 접근보다 모두가 주체?
- ⇒ 각 주체가 외면하고 있는 지점(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 그리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음

#### 2) 학교폭력사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

- ; 법 제정 및 개정, 정책, 교육, 의식변화, 홍보
- ⇒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만드는 사회?
- ⇒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제외된 주체가 법을 해석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해야 함

#### 3) 학교폭력사건 해결과 예방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포함되는가?

- ; 심각한 사회문제 근절, 양육자 책임에 대한 부채의식, 학교 안전망에 대한 의심
- ⇒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 공간 가능?
- 부모 및 양육자 부재 시 안전한 활동,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또래문화 나눔, 잠재 능력 배양,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
- ⇒ 각 활동 공간의 가능을 나열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욕구에 가장 못 미치는 가능을 중심으로 채워나가는 방향성 논의 필요

### 2. 청소년의 삶 들여다보기

#### 1)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삶은?

- ; 가정, 학교, 시설
- ⇒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공간(장소)의 유해성 여부?
- ⇒ \* 머무는 시간과 상관없이 청소년 폭력문화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공간에 대한

### 실태조사와 대안분석

청소년 폭력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함

⇒ 보호자 및 양육자가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 \* 함께 생활하는 시간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질적인 면을 파악해야 함

#### 2)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삶은?

- ;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청소년 관련단체 프로그램 진행기관, 상담기관, OO방, 공원, 독서실, 편의점 등
- ⇒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과 소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차별성?
- ⇒ \* 각각의 공간 유해성보다는 지역사회와의 무책임성과 동일공간을 이용하는 성인-청소년 간 유기적 관계가 유해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에 주목

⇒ 유해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감시?

⇒ \* 유해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법 모색이 우선

\* 오프라인뿐아니라 온라인 공간 모니터링 방법

### 3. 학교 밖 지원망 확충을 위한 전제

; 주체적인 청소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

- 1) 지원망의 방법적 논의보다 담당자의 변화가 우선 ;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들의 역할
  -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법 이전에 모델링으로서의 성인 각각의 모습 성찰하기
  - 청소년 이용시설 담당자의 관점과 시각
  - 여전히 교사역할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담당자보다 청소년과 눈높이가 맞는 담당자로 관점과 시각의 변화 필요
  - 청소년 부모 및 양육자의 관점과 시각
  - 내 아이에 대한 개인적 양육방법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소모임 활동, 교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상담과 소통에 적응하기'

#### 2) 일상생활 속의 지원망 구축 ; 법과 규칙, 정책보다 중요

-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생활 하는 지역사회 규범 바로 세우기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 생활공간 및 이용공간 구성원의 책임성 담론 시작
- 청소년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역사회 분위기 만들기
  - 지역사회 내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 편의점, 도서관, 상담기관, 시장, PC방, 노래방, 극장, 학원 등 청소년을 함께 성장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계
  - 표면적 문제해결의 통계적 성과 지양, 단기적인 성과 지양을 원칙으로 가져가기
  - 학교폭력사건 해결의 장기적 전망은 통계 수치의 성과를 뛰어넘는 집중과 선택이 관건

3) 지원망의 목표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착화

- 소모임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 또래집단의 새로운 문화 생성
- 청소년 기관이 정한 목표중심적 소모임과 동아리활동 주제가 아닌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과 이야기에 지역사회가 귀 기울이는 기간이 필요, 인내심이 발휘되어야 가능
- 의사표현과 기획, 결정의 순환모델 경험 필요
- 청소년자치활동의 결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
- 학습 외에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지원
-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 제공

**[참고자료]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의 글<sup>16)</sup>**

- 이명남(서울 영림중 교사)

왜 그랬나라고 묻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네 마음을 어찌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정말 속상하다....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랬구나.... 그 자리에서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것, 그 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 지독한 외로움에 너는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샜을까.. 베개를 적시며 흐느꼈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온다..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을 거야.. 누구에게 그렇게 화가 났었니?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모르고 있을까 정말 모르실까.. 궁금했던 선생님들에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하고만 있는 나 자신이.. 그려면서도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망설이던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 말고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랬구나.. 가슴에 엄청난 불을 안고 학교로 학교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엄마 잘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가던 너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땅으로 꺼질 듯했던 너의 등교 시간.. 그 아이

16) 이 글은 2012년 1월 16일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촛불집회'에서 낭독된 추모사입니다. 추모사를 쓴 이명남 교사는 영림중 생활지도부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들을 다시 봐야 하는 자よ 같았을 시간과 공간들....그래 나도 화가 치미는구나...

네.. 그러다가 절망했어요. 세상에.. 삶에.. 그래서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힘든 삶을 이기고 살아갈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나에게 다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많이 아팠구나...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구나... 안아주고 싶구나.. 바람에 실려 여기 있니? 자 여기 안겨 봐...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여기 이제야 모였구나..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한 번 이리 와 안기렴. 사랑한다...사랑해..

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장난감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장난감은 주인도 있고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저 길거리에서 어쩌다 발견한 장난감처럼 집어든 사람의 분노를 온몸으로 참아내고 받아내야 했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가 쓰레기통에 다시 처박아 버리고 말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인간으로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그랬구나....누군가에게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는다면 누구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너가 그랬구나...누군가 먼저 알아줬어야 하는데..말 못하는 네 심정을 누군가.. 알았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아무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났어요. 제가 못나서.. 그렇게 당하고.. 부모님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아니야..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우리 모두의 잘못이야...그렇게 생각하지마...

---

내 탓이 아니야 - 책임에 대하여...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지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진짜 몰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사실 난 알고 있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지만 내 탓은 아니야.

난 겁이 났어.  
말릴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 애들은 여렷이었는데, 난 혼자였거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아이들이 그 앤 때리기 시작했어.  
모두 같이 때렸지. 나도 때리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때렸어.

시작한 건 내가 아니야.  
다른 애들이 먼저 그 애를 때렸어.

다 그 애 탓이야. 그 앤 너무 한심해. 우리랑은 너무 달라.

그 앤 이상해. 정말 짜증나는 아이야. 다 그 애 탓이야.

그 앤 명정해. 바보처럼 그냥 서서 울기만 했어

툭하면 우는 남자 아이들 난 딱 질색이야. 정말 짜증나.

그 앤 선생님한테 이를 용기도 없을 거야. 겁쟁이 같으니라고. 난 그따위 녀석에겐 관심없어.

그 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게 마음에 걸려. 그때 그 애 얼굴을 잊을 수 없어.

그 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우릴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지.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때리긴 했지만, 그냥 별 뜻 없었어.  
모두가 때렸거든. 내 탓이 아니야.

---

정말 내 탓이 아닐까?

---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응 그래 내 탓이야...우리들 탓이야...

**웃기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애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날 위로하려들지 마세요. 역겨워요.**

그래 그럴 거야.. 우리는 모두 직접 너를 괴롭힌 아이들만 가해자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이야.. 우리 모두 가해자야.. 너의 죽음에 모두 모두 가해자라고 느껴야 돼. 그래야 네가 힘들게 살았던 세상에서 다시는 너와 같은 아픔을 겪을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 탓이고 우리 탓이야..

**정말 그럴까요. 모두 내 탓이라고 하면 나와 같은 일이 안 생길까요?**

응 그럴 거야..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너의 죽음이 우리들의 눈을 조금더 뜨게 했거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더 알게 했거든...

어떤 곳에서는 너를 괴롭힌 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또 다른 죽음을 없앨 거라 떠들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단다. 무엇이 너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인지... 잘 안단다.. 떠나간 너는 조용조용 남아있는 우리들 마음에 스며들어 슬픔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게 하였단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나를 위로하려 하시죠?**

그래 너는 나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단다.. 하지만 너를 안단다.. 아주 오래전 어떤 아이들이 나에게 교사가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있어.. 전근 가서 새로 만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며 공부하고 부추기던 나에게 그 이전 학교의 아이들이 노란색 프리지아꽃과 함께 왔었지.. 맞아 그 애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어.. 그 전 해에.... 쳐다만 봐도 좋았던 아이들이었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키면서 나는 교사랍시고 행세했던 거야.. 난 화들짝 놀랐지.... 난 진정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짓은 누구라도 팔 수 있는 지식나부랑이나 자랑하면서 교사인양 굴었던 거야.. 어리석은 짓거리였던 거야..

대구에도 광주에도 제주에도 대전에도 내가 사랑하는 교사들이 계시지.. 그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기에 나도 사랑해야 맞지.. 그래 모든 아이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아이들이지.. 너도 그 중에 하나였지.. 다만 지리적 물리적 공간이 멀어.. 못 만났을 뿐... 너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중 하나였어.. 그러나 너의 죽음은 당연히 나를 몹시 아프게 하는 것이야 가슴이 저미어 와... 무슨 말도 너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지만.. 나는 그래.. 너를 사랑해.

**제가 필요한 건 당신의 위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힌 아이들의 사과에요.. 나는 그 아이들이 몹**

**시 미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러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당연히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마을 거야.. 그리고 무서웠을 거야.. 넌 혼자였으니까... 나도 그 아이들에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어.. 하지만 몹쓸 '가해자'로 뭉뚱그려져 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기가 겁난다.. 잔뜩 겁먹고 있을 그 아이들.. 너의 죽음에 놀라.. 그리고 이어지는 어른들의 가혹한 질책에 놀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보기가 겁난다.

그런데 얘야.. 너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아이들도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네 마음의 상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아이들의 꽉꽉한 삶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미안해 네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언젠간 이해해줄 거라 믿어....

박식한 과물이어도 좋다.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만 가면.. 몰아치던 어른들은 쏙 숨어버리고 겁먹고 있을 아이들만 죄인인 양을 몰아세우는 어른들의 불편한 진실로부터 그 아이들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슬퍼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당신 이상한 사람아군요. 나를 위로한 말은 뭔가요? 거짓인가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이상하게 보일 거야.. 하지만 너에게 한 말들은 모두 내 진심이야.. 믿어주었으면 해..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만이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어떤 별도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자는 못할 거야.. 문득 문득 스치는 네 생각에 그 아이들은 자유롭지 못할 거야.. 자기 가슴을 칠지도 몰라.. 용서는 네가 하는 거야...

나는 다만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 스스로 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려면 나는 그 아이들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섭섭해 해도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구나..

나는.. 강력한 처벌... 치유할 수 없는 처방전만 내세우는 어른들이 밉구나.. 그것이 너를 위한다고 믿는 어른들의 무지가 무섭구나.. 무엇이 너와 같은 죽음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는지 모르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려는 사회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들과 가해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들 모두를 어른들이 진정 사랑할 줄 아는 때가 오도록 내 작은 힘을 아낌없이 쓸 것이라는 말로 너의 섭섭함을 달래고 싶구나.

너와 밤새 이야기하고 싶지만 미안하다.. 이제 작별 인사할게..

바람 속에 너가 있겠지... 허공 속에 너의 몸을 이루던 것들이 흩어져 있을 거야. 숨을 쉬면. 그 러면 넌 우리 안에 있다....

이 세상 모든 폭력이 만들어낸 너의 죽음을 학교폭력의 희생자라 구분짓는 어른들의 죄를 사과 하며..... 내 탓이 아니라는 어른들의 무책임에 대해 용서를 함께 구하며..  
미안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계속될 거야... 하지만 이 세상 아이들이 너로 인해 행복해진다면  
넌 웃어줄 거지....안녕... 잘 있어...

2012년 1월 16일 이 명 남